

2026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학술대회 및 총회

일본군'위안부'연구의 인식확장과 연대

2026.03.28. (토) 13:00~17:50

민족문제연구소 5층 강의실 *비대면 병행 예정(개별안내)



◀ 참가신청 바로가기

개회

13:00~13:10

개회사

세션 1 과거사 소송 운동의 현주소

13:10~14:40 / 사회: 이정선(조선대학교)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 한국소송 제기와 의미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다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소송의 내용과 의미
하주희(법무법인 울립)

토론: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세션 2 인식 확장을 위한 연구 동향

14:55~16:35 / 사회: 장수희(동아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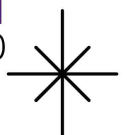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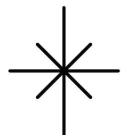
인도주의 국제규범의 전유와 근대 한국의 젠더 통치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국가화된 증언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과거사 여성 피해 증언을 중심으로
송혜림(연세대 비교문학연구소, 5.18열매)

토론: 예지숙(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최성용(성공회대학교)

총회

16:50~17:50



[일본군'위안부'연구회 2026년 상반기 학술대회]

일본군'위안부'연구의 인식 확장과 연대

일시 | 2026년 3월 28일(토) 13:00~16:40

장소 | 민족문제연구소 5층 강의실

주최 |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세션 1 과거사 소송 운동의 현주소

사회 | 이정선(조선대학교)

발표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 한국소송 제기와 의미 3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발표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다: '미군위안부' 국개배상 소송의 내용과 의미 11 하주희(민변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단장, 법무법인 율립)
토론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세션 2 인식 확장을 위한 연구 동향

사회 | 장수희(동아대학교)

발표	인도주의 국제규범의 전유와 근대 한국의 젠더 통치 29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발표	국가화된 증언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과거사 여성 피해 증언을 중심으로 41 송혜림(연세대학교 비교문학연구소, 5·18열매)
토론	예지숙(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최성용(성공회대학교)

[세션 1]

과거사 소송 운동의 현주소

사회

이정선(조선대학교)

발표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 한국소송 제기와 의미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다: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소송의 내용과 의미

하주희(민변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단장, 법무법인 율림)

토론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야스쿠니 무단합사철폐 한국소송 제기와 의미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1. 서론

군인·군속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 10명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5767). 한국 법원에 최초로 종교법인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군인·군속 희생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소한 것도 처음이다.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부산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소한 것이 2000년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2016년이며, 이들 소송의 원고 중 일부는 생존 피해자였다. 하지만 야스쿠니 무단합사철폐 소송은 성격상 유족이 제기하는 소송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가장 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소송이 제기된 경과와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들

가. 서론에서 언급한 두 소송들의 원고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한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야스쿠니 소송의 원고들도 모두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며 한국 법원에 다시 제소하게 되었다.

나. 일본 소송은 군인·군속 피해자 소송(2001. 6. 29. 제소), 제1차 야스쿠니 소송(2007. 2. 26. 제소), 제2차 야스쿠니 소송(2013. 10. 22. 제소) 등이 있으며, 2025. 9. 19. 제3차 야스쿠니 소송이 제기되어 일본 도쿄지방법재판소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다. 군인·군속 소송은 일본 정부만을 피고로 하였고,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야스쿠니 소송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인데, 군인·군속 소송에는 원고들 중 6명이, 제1차 소송에는 2명이, 2차 소송에는 6명이 참여하였다(원고들 중 일부는 군인·군속 소송과 야스쿠니 제1차 혹은 제2차 소송의 원고로 중복 참여한 경우가 있다). 또한 원고들 중에는 일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였던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사망하여, 한국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희생자의 며느리가 2명 있다.

라. 희생자들은 모두 1959년에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

3. 피고들

가. 야스쿠니 무단합사철폐 소송이니 당연히 야스쿠니신사를 피고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졌으나, 일본 정부를 공동 피고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했고,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 주장을 할 것이 명확하므로 일본군‘위안부’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의 국가면제에 관한 판단을 야스쿠니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였다.

나. 일본 정부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을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일제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하여 강제동원하여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도 묻기 위하여 공동 피고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4. 청구취지

가.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일본 정부에 100,000,000원을, 야스쿠니 무단합사와 관련하여서는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에 20,000,000원을 위자료의 일부로 청구하였다. 위자료 100,00,000원과 20,000,000원은 모두 손해배상의 일부로 청구하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

나. 또한 야스쿠니신사에 대하여는 영새부, 제신부 및 제신명표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5. 한국에서 진행된 선행 소송

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2. 5. 24.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 68620 판결),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희생자들을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한 일제의 행위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이라는 국가범죄적 행위로서 인신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도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소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심에서는 국가면제¹⁾를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났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법정지국(한국) 영토 내에서 자국민에게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유효한 국제관습법이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나 2017165)하여 피해자들이 승소하였다. 물론 이 사건 이전인 201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민사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조정 불성립으로 2016년 정식 재판을 진행하여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배척하여 승소한 판결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0479).

강제동원은 단순한 전시 행정조치가 아니라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국제인권법의 핵심적 보호 영역에 속하며, 오늘날 국제법 질서는 국가의 주권 보호보다 개인의 인권 보호와 실효적 피해 구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국가면제 법리의 해석과 적용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1) 국가면제(주권면제)란 ‘대등한 자는 다른 대등한 자에 대해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par in parem non habet imperium)’는 주권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외국)를 소송의 당사자로 삼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다.

일본 정부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희생자들을 강제동원하여 사지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사후에 유족의 동의 없이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하여 무단 합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침략전쟁과 결부된 대규모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그 희생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가해 국가의 전쟁 서사 속에 편입시키는 행위는 희생자의 인격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으로서 반인도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침해는 일회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유족의 현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발생시키는 계속적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무단합사는 강제동원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사후에도 지속강화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족들의 인격권과 종교적 자유 및 종교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이는 그 침해 효과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자국민에게 자행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영토 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선행 소송을 통하여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고, 강제동원 역시 불법이며, 일본 정부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면제 역시 한국 법원에서는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6. 야스쿠니신사 합사 과정

가. 야스쿠니신사²⁾는 초혼사상과 국가신도사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천황제라는 이념을 종교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제 파시즘을 종교적 의례로 발현시킨 수단이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국가이데올로기의 상징적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나. 야스쿠니신사는 일제가 패전한 후에도 여전히 한반도를 침략한 메이지 천황의 유산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천황과 일본국을 위해 순국한 전사자의 영령을 제신(祭神)으로 삼고 있다. 육군성과 해군성이 관할하던 군사시설로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전장에서 의 죽음을 미화한 야스쿠니신사의 교리와 의례내용과 형식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전전

2) 17세기초부터 이어져 오던 에도막부시대는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막을 내린다. 에도막부 말기 막부세력과 관군세력 간의 대규모 내전이 일어났고, 이 내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수의 전사자를 낳았다. 정권을 잡은 관군은 정권 수립에 공훈을 세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1869년 도쿄초혼사(東京招魂社)를 설립하였다. 메이지정권은 1874년 도쿄초혼사에 별격관폐사(別格官幣社)의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가 그 제사를 담당하는 신사이자, 그 신사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지위를 부여하였다. 1897년 도쿄초혼사는 야스쿠니신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의 야스쿠니신사와 전후의 야스쿠니신사(종교 법인)는 일체성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희생자들에 대한 합사 절차는 인양원호국이 도도부현에 명령하여 합사 예정자를 원부에서 조사하여 인양원호국에 보고하게 하고, 인양원호국이 심사를 거쳐 합사자를 결정하고 '전몰자명부'를 작성해서 야스쿠니신사에 제출하면, 야스쿠니신사가 이를 토대로 제신명표, 제신부, 영새부를 만들어 합사를 실행하며, 합사 실행 후 야스쿠니신사가 합사통지서를 작성하여 도도부현과 유족에게 보내고, 도도부현은 원부에 합사되었다는 의미로 합사제(合祀濟)라고 기입함으로써 합사 사무가 완성된다.

라.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 있는 유족에게는 이러한 통지를 한 바가 없다. 원고들은 해방 이후 희생자의 행적을 모른 채 수십 년을 보내왔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야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이관받은 군인·군속명부가 정부기록보존소 (현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찾아 열람하면서 사망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희생자의 이름이 담긴 '유수 명부'에서 '合祀濟(합사제)'라는 기재를 보고 희생자가 사망 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 소송이 시작된 것이었다.

7.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의 위법성

가. 추모(追慕)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망인의 유족이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유족의 추모감정'은 유족이 망인의 생전에 망인과 가족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된 유대관계에 기초하여 망인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의미한다.

나.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은 유족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때로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지 또는 그 영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매몰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의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

다. 유족이 스스로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고,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외부에서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

서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2007 헌가23 결정)

라. 망인들이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황민화 정책 속에서 강제동원되어 전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는 망인들을 ‘대일본제국 전쟁 수행에 기여한 전몰 영령’으로 간주하고 침략 전쟁의 가해자였던 불명예스러운 전범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인 망인들을 끔찍한 전쟁 범죄에 마치 자의에 의해 기여한 자들처럼 분류하여 망인들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 없이 동일한 역사적·종교적 구조 속에 편입시켜 자신들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마. 이는 망인들의 사회적 명예와 평가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망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훼손시키는 행위이고 전쟁 범죄에 망인을 잃은 유족들에게 심각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망인의 유체·유골은 그 법적 성격상 유족에게 승계되며, 망인을 어떤 방식으로 추모·제사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은 제사주재자인 유족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권리이며,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과 같은 망인의 생전 의사 역시도 도의적으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률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며, 최종 결정권은 제사주재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은 망인을 어떤 의례로 추모할지, 어떤 종교적 의미를 부여할지, 어떠한 역사적·정체성적 맥락 속에서 기억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헌법상 인격권(근친자 추모권·평온한 정신생활 형성권)과 결합하여 더욱 강하게 보호되는 이익이다.

사. 피고들은 망인들을 일본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신사의 종교·이념체계 속에서 합사하고, 추모 및 제사 되는 상태에 강제로 두고 있으며, 원고들의 합사 철폐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유골의 처분 및 제사 방식은 제사주재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피고들은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유족의 제사권을 박탈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종교적 목적에 따라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망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유족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족이 부정하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여 유

족의 종교·신앙적 확신에 반하는 의례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률상 제사주재자인 원고들이 가지는 망인의 제례 방식 결정권과 제사·추모의 주도권을 침해하는 한편 망인들의 후손인 원고들이 가지는 종교·문화적 정체성에 따라 망인을 기릴 권리를 침해하며 나아가 원고들의 역사 인식·종교 양심의 자유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정신적 영역을 침범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8. 예상되는 소송 진행 과정

가. 일본 정부는 소장을 받은 것 자체를 국가면제를 이유로 거부할 것이며, 야스쿠니 신사에 소장을 송달하는데도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결국 송달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나. 일본 정부는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소송과 마찬가지로 일체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도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응소하지 않을지 아니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한국 법정에 나올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원고 대리인 입장으로는 야스쿠니신사라도 응소하기를 기대한다.

9. 소송의 의미

가.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한국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들에게 내린 패소 판결을 한국 법원이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이 소송은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여 일제의 식민지배와 군인·군속 강제동원의 불법성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을 직접 요청한다는 의미가 있다.

나. 합사철폐 청구는 과거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족의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과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적인 합사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하여 희생자의 이름을 야스쿠니신사의 영새부, 제신부, 제신명부 등에서 삭제를 하라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다.

다. 유족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소송이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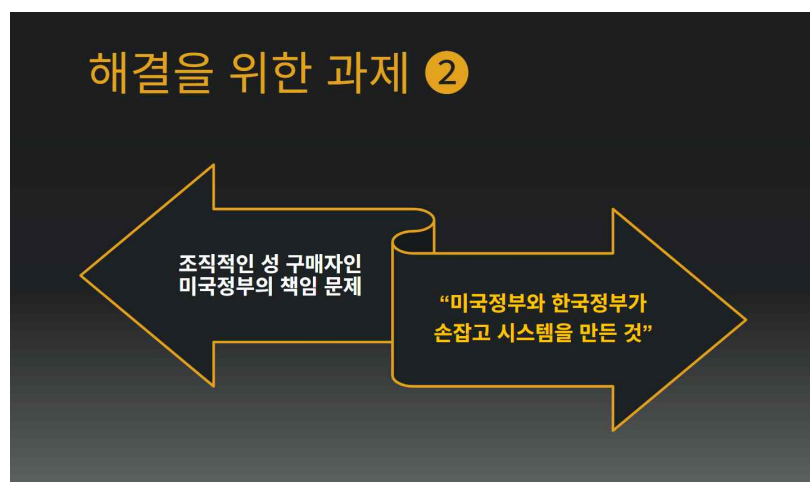
: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의 내용과 의미

하주희

(민변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단장, 법무법인 율림)

1. 판결로 확정된 이름, '미군 위안부'

2018. 2. 28. 일본군 '위안부'연구회가 주최한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시 갓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고무되어 발표를 한 적이 있다. 2014년 6월에 시작했던 기지촌 여성들의 소송이 2022년 9월에 이르러서 한국 정부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였고 폭력적인性病관리로 인해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으니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판결로 '미군 위안부'라는 존재와 이름을 확인하였고, 이제 '미군'이 나서서 '만든' '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을 시작한 지금, 다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새삼스럽다. 2018년 발표 당시 발표문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국적 과제로 '미군 위안부'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손잡고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조직적인 성의 구매자인 미국정부의 책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제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 '미군 위안부'1)들은 현실의 법정에서 섰다.



1) 아래부터는 따옴표를 생략하고 미군 위안부라고 지칭한다.

2. 소송의 내용과 의미

가. 소송개요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356 손해배상(국)
 - 원고 : 주한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 생활을 한 여성 117명
 - 피고 : 대한민국
- 1) 대한민국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공무집행중의 미군 구성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 미군 주둔 중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하 '미군당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1968. 2. 9.부터 효력 발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p>제23조 청구권</p> <p>5.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조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p> <p>(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며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p> <p>(나) 대한민국은 전기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p> <p>(다) 이러한 지급(합의에 의한 해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를 불문한다)이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p>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p>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 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교섭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p> <p>제23조</p> <p>1.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서울 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p>

후 6개월만에, 그리고 대한민국 안 다른 곳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후 1년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 : 대한민국과 미군당국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선행판결에서 확정된 대한민국의 책임²⁾

위법성	근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 ‘애국교육’의 실시와 성매매 정당화·조장 ■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와 성매매 조장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 격리수용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p>1977. 8. 19. 구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 법적근거 아예 없음 1977. 8. 19.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한 경우, ‘토벌’,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p>

위 판결에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판시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2018다233866판결).

2) 하주희, 『페미니즘 연구』,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을 돌아보며」, (사)한국여성연구소, 2023. 봄

2) 미군당국의 책임

○ 미군당국의 불법행위 1 : 적극적·능동적 성매매 정당화·조장

- ① 미군당국은 기지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미군들에게 업소 출입을 허용하고, 성병 통제를 위해 여성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클럽 업주들과 특별구역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1975. 6. 9. 한미1군단 사령부 사령관 「성병 통제에 대한 한미 상호 협력」
첨부 「모든 미군 인원에 대한 공지」

1. “직업여성”과 만남

“직업 소녀들/여성들” 단어는 법적 결혼 없이 상습으로 미군 인원과 교제하는 한국인 여성들을 특정하기 위해 한국 당국에 의해 사용된다. 한국 사회의 눈에는 그들은 매춘부로 간주되고, 지방 법령으로 직업여성조합 가입과 성병 검진과 치료의 현재 상태를 반영한 유효한 보건증을 소지할 것이 요구된다. [생략]

대한민국과 미군당국이 미군 위안부들에게 보건증 소지를 요구한 이유는, 미군당국은 이른바 “직업여성”이 미군의 성매매 상대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군당국은 등록된 여성과 등록되지 않은 여성의 수도 파악하고 있었고, 이들이 미군의 성매매 대상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은 해당 성매매업소에서 성병감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들에게 성매매업소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였다. 1973. 3. 2. 제5차 주한미군 민사회회의에서 캠프 케이시 제2보병사단의 P.D. 부라스 중령은, 군대 성매매를 금지하는 미국의 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주한미군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매춘에 대한 군 정책은 전면 억제이고 이것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 회의에서 캠프 케이시 인근에서 미군 당국이 부대 인근 클럽 업주들과 성매매 통제, 감염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이었다. 즉 미군 당국은 미군의 성구매 행위를 금지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으며, 출입금지구역 여부만 문제삼았을 뿐이다.

② 인종 무관하게 모든 미군의 요구에 응하여 성매매를 제공하도록 강제

미군당국은 기지촌 여성들을 인종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성매매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하도록 했고, 미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북괴가 인종 문제 악화시키고 한국 국방을 악화시킨다”는 심리작전을 하기도 하였다.

미군당국은 1970년대 초 급격히 대두된 아프리카계 미군 병사들(이하 당시 표현을 빌어 “흑인”이라고 표기)의 인종차별 문제제기에 대하여, 미군 위안부들에게 ‘인종차별없이 성매매를 제공하라’고 권고하였다. 만일 특정 ‘미군 위안부’가 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미군 위안부가 나가고 있는 클럽에 오프리밋을 발동하여 미군 병사들의 출입을 금지하여, 사실상 이 권고에 따라 모든 미군의 요구에 따른 성매매 제공을 강제한 것이다.

미군당국은 흑인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내부 보안을 약화시켜 무의적으로 북한을 돕는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고,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 손님들을 평등하게 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1971. 4. 26. 미 용산 개리슨 사령부, 「군 인원을 위한 평등 기회 및 대우」
<p>2. 미군 개리슨 사령관은 1971. 4. 26. 이태원 지역 클럽 업주들을 만났다. 모든 미군 인원들에게 인종, 피부색, 종교나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평등 대우하는 것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p> <p>3. 업주들은 바텐더, 웨이트리스, 고용인 및 접대부들entertainers을 모든 유엔사/주한미군 인원들에게 동등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하도록 요구받았다. 이 서비스들은 아래 각 항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클럽 출입 b. 클럽 자리 배정 c. 웨이트리스, 바텐더, 접대부 및 고용원에 의한 서비스 d. 군 인원들과 춤추기 <p>6. 업주들은 만일 차별이 어떤 클럽에서든 계속되면 출입금지조치(오프리밋)이 강제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다.</p>

1971. 7. 28. 미 심리작전부대, 「제24 심리전단 이태원 심리작전 자료」
<p>1. 우리의 대화마다, 이태원 인종 문제들에 관련된 심리전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부대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견본으로 첨부되었다.</p> <p>2. 다음은 그 첨부물과 제안된 프로젝트를 연대순으로 열거한 것이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한국어 전단(번역된)이 6. 14. 클럽 업주들에게 배포되었다. 전단은 문제와 주한미군의 인종 문제가 직면한 상황을 활용한 북한의 선전을 포함한 문제와 그에 부수된 문제를 개괄했다. b. 7. 2. 8장의 포스터와 500장의 전단지 7개 클럽 업주들에게 배포되도록 용산 경찰서에 전달되었다. 각 포스터는 한국어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접대한다”. 한국어 전단은 웨이트리스에 의하여 여성 고객에게 배포되었다.(번역된 복사본 포함)

1972. 1. 21. 외무부장관,
대통령 보고문서 「외국군 기지촌 정화대책에 관한 방안」
첨부 1972. 1. 7. 외무부 구미국 작성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및 대책」

3. 임시분과위원회가 채택한 한미 양국 대정부 건의사항(Recommendations)
바. 인종차별문제
1) 건의제목 : 미군기지촌 소재 한국 유흥시설에서의 인종차별 철폐
내용 : 한국 지방관계기관은 미군기지 관계관과 협력하여 한국 유흥업체에서 인종차별없이 대우하도록 장려할 것. 한국 관계기관은 봉급날 및 주말 등과 같이 다수의 고객이 올 것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고객수에 알맞는 종업원을 배치토록 할 것.
2) 건의제목 : 미군기지촌 소재 유흥업체에서 고용하는 접대부에 의한 인종차별 철폐
내용 : 한국 지방관계기관은 미군기지 대표자와 협력하여 유흥업체에서 고용하는 접대부가 고객을 대우함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장려할 것. 미국 관계당국은 흑인 병사들을 접대하는 선의의 접대부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백인 병사들을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교육하고 지도할 것.

1971. 10. 11. 한국관광휴양업협회, 「미군의 불법적인 처사에 대한 보고」

1. 당 협회 산하 경기 양주군 동두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군의 불법적인 처사가 발생하였기 보고하오니 시정초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발생일시 1971. 10. 2. 22시경
나. 발생장소 경기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429
뉴욕크럽(대표 임장순)

다. 내용
1971. 10. 2일 22시경 동두천 주둔 미 2사단 소속 G-I HILLARD(힐라드) 외 1명의 미흑인이 뉴욕크럽에 들어와 검열관을 자칭 별첨 검열표를 임의로 작성면서 홀 업태부 ○○ ○에게 왜 흑인이 춤을 추자는데 응하지 않았느냐고 묻기에 영업시간이라 복잡하였고 6개월 간이나 동거 생활을 하는 율리라는 흑인을 찾느냐고 듣지 못하였으며 흑인과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이 흑인을 차별대우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당신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던바 흑인은 두고보자하고 나가버렸음. 그후 10월 6일을 기하여 위 뉴욕크럽이 흑인 차별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미군 출입금지령이 내렸음 [생략]

1971. 10. 5. ○○○ 진술서

[생략] 본인은 상기 주소지 소재 뉴-옥홀 업태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1971년 10월2일(토요일) 하오 10시경 홀에 서서 일하고 있든바 그때 6개월간 살림하던 흑인 윌리라는 사람도 있었으며 갑자기 음악실에 있는 정경식씨와 낯모르는 흑인이 와서 왜 춤을 추자는데 안 추워주느냐고 하기에 이렇게 복잡할 때 내가 못 들었지 왜 춤을 안 추어주겠느냐고 대답한 사실이 있기에 자이 진술합니다.

1973. 2. 21. 미 제2보병사단 민사참모부, 동두천읍장, 관광협회 지부장이 서명한 동두천지역 크라브에 대한 합의된 기본 합동서명

2. 모든 고객은 인종, 종교나 피부색과 관계없이 접대를 받는다. 어떠한 종류의 인종차별이라도 금지된다. 모든 종류의 음악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음악이 고루고루 틀어져야 함.

5. 크라브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반듯이 등록되어야 하며 제대로 된 검진증과 명함을 소지하며 이름표를 달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 세가지를 구비하지 않은 여자는 출입 못하도록 한다. 여자들은 어떠한 손님이라도 제시 요구시는 검진증을 보이며 그리고 그 여자와 관계가 있을 때는 명함을 손님에게 제공한다. 손님들은 앞으로 그 여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자들로부터 명함을 받도록 권유된다. 이름표는 가슴 위에 붙인다.

[생략]

11. 여자들은 노상에서 청객행위를 못하게 하며 미등록 노청행위 여자들 및 펌푸들은 즉시 크라브 업주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한다.

한국에서 미군당국이 여성들을 이용하여 인종차별에 대응하려 했던 것과 주 서독 미군이 채택한 인종 갈등 해결 방안은 전혀 달랐다. 1970. 7. 4. 하이델베르크 대학 ‘정의를 요청하기 위한 회의’등을 하면서 흑인 병사에 대한 차별에 문제제기를 하자, 주 서독 미군은 군대 내 깊숙하게 뿌리 박힌 인종차별을 해결할 포괄적 국방부 프로그램 시행하였다. 이는 전례없는 포괄적 차별철폐조처로서 더 더 많은 직종의 흑인 전문가들을 투입하고, 군 자녀 학교체제 내 흑인 콘텐츠 증가, 서독에 흑인 병사 이익 대변을 위한 계열사무소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서독 역시 흑인 병사들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수상인 빌리 브란트와 국방부장관 헬무트 슈미트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③ 미군기지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도록 허용

1971. 1. 21.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외국군 기지촌 정화대책에 관한 방안」에 첨부된 1972. 1. 7. 외무부 구미국 작성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및 대책」에 따르면, 미군 영내에 ‘출입’하는 ‘직업여성’이 동두천에서만 1일 4~500

명에 달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즉 ‘미군 위안부’가 미군기지 영내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기지촌 클럽주들이 항의하는 건의서를 보내기도 할 정도였다.

1973. 3. 30. 한국관광휴양업협회, 「건의서」
<p>당협회 산하 회원은 미군 기지촌에서 주한유엔군 전용의 관광휴양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유엔군의 휴양에 손색이 없는 시설과 각종 주류를 염가로 제공하여 최대의 써-비스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 및 부평지역 미군부대에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건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다 음</p> <p>1. 동두천 지역</p> <p>가. 한국인 윤락여성을 영내 크라부에 대거 유치하고 있습니다. 숙녀를 영내에 초청한다는 이유로 매일 저녁 윤락여성 200여명을 버스 또는 도보로 영내 크라부에 유치하고 있는바 [생략]</p>

그러자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군민관계 한국측 위원인 외무부, 보사부 등 각 부처 담당과장들이 동두천 지역 현지답사를 실시하였고, 미군당국은 영내 윤락행위는 불허된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미군당국은 그 후에도 미군시설 정문에서 검진증을 점검했다. 이는 영내에 출입하는 미군 위안부로부터의 성병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미군당국이 미군기지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1973. 5.경 「동두천 지역 군민관계」 중 1973. 5. 25. 군민관계 한국측 위원들 동두천 지역 현지답사
<p>4. 73. 5. 25. 군민관계 한국측 위원 현지답사</p> <p>(1) 참석자 : 교통부 진흥과장 김철용 내무부 관리과장 백세현 외무부 북미2과장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 서기관 양세훈 보사부 만성질환담당관실 황홍석 내무부 치안국 황 경위</p> <p>(2) 조사내용 :</p> <p>(가) 윤락여성 영내 유치</p> <p>1) 관광협회 양주 지부장 이건차 및 동두천 지구 윤락여성 단체 민들레회(회원 2,359명) 총회장 김상수는 매일 1700-1800[17:00-18:00] 사이 2-3회씩 미군차량</p>

으로 윤락여성(대부분 민들레회 회원)들이 영내로 들어가며, 영내 출입수가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일 약 2-300명으로 추산된다고 진술함.

- 2) 이들 진술에 의하면, 미군영내 클럽측이 윤락여성들의 주민등록증과 검진증을 확인한 후 승차시킨다 함.
- 3) 군민관계 한국측 위원들은 매일 2-300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별첨(3)과 같이 미군 차량에 의한 영내 출입을 확인함. 위원들이 목격한 차량번호는 USFK Vehicle 7 이었으며 차체에 CCA NCOOM We give a damn 이라고 쓰여 있었음. 이밖에 다른 차량도 목격되었음.

5. 대책

SOFA 군민관계 분과위원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

1976. 11. 16. 한미 제1군단(집단)후방-의정부시, 양주/고양군 지역 한미친선위원회
의정부시 지역 한미 성병관리 분과위원회

VIII. 제의, 토의 및 합의사항

2. 미군시설 정문에서의 검진증 점검---대위 머스그레이브

④ ‘애국교육’실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770 판결은 “대한민국은 미군과 함께 정기적으로(주로 월 1회, 미군의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때에는 월 2회 시행되기도 함) 미군 위안부들을 기지촌 내 주요 클럽과 같은 장소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행하였는데, 이 교육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미군 의무부대 장교, 보건소 직원, 경찰서장, 군수, 자매회장, 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미군 위안부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만 했다. 교육을 실시한 담당 공무원들은 위안부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하는 한편, 위안부들에게 성병에 관한 보건의로 지식을 전달하면서 성병 검진을 반드시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들은 위안부들에게 ‘앉는 태도’ 즉 ‘가량이 벌리지 마라. 다리를 꼬고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앉아라.’라는 등 미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 위안부들이 취해야 할 태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교육하였다. 한편 군수나 군청 관계 공무원, 관광협회장 등이 위안부들을 격려하면서 취업보장, 노후보장, 전용아파트 건립 등 혜택을 약속하기도 하였다”(22쪽)고 실시하여, 미군당국이 위안부들에 대한 ‘애국교육’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단지 참여한 것만이 아니라 소위‘애국교육’을 공동으로 계획하여 실시하였고, 교육 참석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교육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한국측의 교육 내용도 통역을 통해 파악하기도 하였다.

1974. 1. 22. 미8군 사령부, 「한미친선협의회 분기별 활동 보고 요약」	
첨부 2	1974 회계연도 2분기 한미친선협의회 활동 선별
35.	한미1군단과 협력하여 경기도는 성병/마약 강의를 의정부, 양주군, 파주군에서 개최했다. 1,500명 이상의 직업여성들이 참석했다.
36.	수많은 반 성병 강이가 제2보병사단 인원과 한국 공무원들에 의해 이뤄졌다.
1973. 미8군 사령부, 「한미친선위원회 분기별 활동 보고 요약」	
첨부 2	1973 회계연도 4분기 한미친선위원회 활동 선별
33.	한미1군단과 협력하여 경기도는 성병/마약 강의를 3번 개최했다. 강의는 의정부, 양주군, 파주군에서 이뤄졌고, 대략 1,600명의 직업여성들이 참석했다.
34.	2사단 사령부는 3,000명 이상 직업여성들에게 성병과 인종 관계 강의를 개최했다.

⑤ 미군범죄를 방관하여 폭력적인 성매매 조장

미군 위안부들은 위안부 생활 중에 미군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에 시달렸는데, 미군 헌병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범행 직후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를 방관하여, 미군 위안부들은 성매매를 요구하는 미군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 미군당국의 불법행위 2 - 미군 위안부에 대한 조직적·폭력적·성차별적인 성병 관리 주도

① 대한민국에 미군 위안부 격리 요구

성병감염 여성에 대한 강제격리치료는 미국 내에서는 1953년에 페니실린 도입과 인권문제로 이미 폐지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은 한국에서는 1970년대 격리수용시설을 새로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1971. 11. 24. 제68차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된 건강과 위생 패널의 건의	
a.	성병 예방과 관리 임무를 맡은 한국과 미군 당국은 성병을 옮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성병이 나왔음이 선언될 때까지 공공 장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b. 모든 지역의 한국 민간과 미군 당국은 성병의 원인, 영향, 그리고 제거법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새로 실시하거나 강화한다. 프로그램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주로 미군 인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

1972. 2. 3. 외무부, 「기지촌 정화를 위한 외무부 시행계획」

수신 : 대통령 비서실장, 내무, 보사담당비서관

I. 시행 중인 사항

1. 성병 관리

가. SOFA 제69차 합동회의(71. 12. 16.)에서 성병의 원인제거와 기지촌 한국 “크럽” 변소 시설의 위생개선에 대하여 각각 건의서를 채택, 통과시키고, 이를 관계부처가 시행 중에 있음.

나. SOFA 제69차 회의에서 합의, 채택된 사항 :

(1) (가) 성병예방을 담당하는 한·미 관계당국은 성병 보균자로 하여금 치료토록 하고 완치 될 때까지 공중으로부터 격리할 것.

(나) 한국 관계당국과 미군당국은 성병의 원인제거 및 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함께 세울 것.

4.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 강화

SOFA 합동위 제68차 회의(71. 11. 24.)에서 한·미 양국이 한·미 친선협의회를 신설할 것을 합의하고, 지역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상호 우의를 위하여 각 지역의 적당한 “레벨”에서 한·미 친선협의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 통과시킨 바 있음.

양국간의 상위 “레벨”에서뿐만 아니라, 도, 시 단위의 각 지역 “레벨”에서 친선협의회가 조직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1973. 3. 16.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13차 보고서

3. [생략] 임시분과위원회는 이[성병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 영역을 발견했다.

a. 치료 시설. 임시분과위원회는 1971년과 1972년의 관찰 방문에서, 기지촌의 한국인 특수집대부의 성병 검사와 치료를 위한 시설이 매우 부적절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 정부의 “기지촌정화위원회”는 1972년 하반기에 1억 4천만원을 한국의 주요 기지촌(동두천, 평택, 의정부, 인천, 파주, 대덕, 군산(옥구), 칠곡, 대구, 서울(남부서울병원), 부산)에 11개의 성병진료소 건설과 보수에 책정했다. [생략] 한국 정부는 한국의 북부 지방인 경기도에 5개의 크고 신규, 또는 보수된 성병클리닉을 완공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고, 모두 55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이들 클리닉은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다. 59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6개의 시설은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 나머지 17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더 작은 시설은 1973. 4.에 열 계획이다. 별첨 1에 한국 정부가 1억 4천만원을 책정해 건설하고 장비를 갖추고, 1973년의 운영에 9310만원을 들인 11개의 신규, 그리고 보수된 성병클리닉의 현황에 대한 요약은 첨부했다.

c. 임시분과위원회는 모든 특수접대부들의 등록과 미등록 매춘부에 대한 단속이 기지 지역에서의 성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달 간 모든 특수접대부들을 등록하고 성병 검사 카드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와중에 미군당국은 각각의 당국이 성병에 감염된 특수접대부를 식별하고 치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다양한 노력들을 지원했다.

이 격리조치는 ‘토벌’이나 ‘컨택’을 통해 여성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 법적 근거는 없었다. 성병관리소에서의 긴 격리기간 유지와 페니실린 과다투여 등으로 인하여 미군 위안부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당시 국내에서 성병을 치료할 때 사용했던 페니실린 양은 120만 단위 정도였는데, 미군은 480만 단위에서 600만 단위를 권장(1973. 3. 16. 민군관계소위원회 회의록)하기도 하였다.

1974. 2. 14. 주한미군 예방의약국장 제임스 해썬웨이 중령,
(1. 28. ~ 2. 2.) 「답사 보고서」

6. 확인한 사항 :

g. 왜관 보건소와 성병 클리닉. [생략] 감염된 여성들은 7일 동안 격리되었다. 이 기간은 과도하지만, 캠프 캐롤 진료소의 Gallo 박사는 다른 심리적 이점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한국 보건사회부 [장관] 김 박사, 세계보건기구 Antal 박사 모두 페니실린으로 여성들이 치료받는 경우 격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들은 격리기간을 줄일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② ‘토벌’, ‘컨택’에 미군 헌병 출동, 미군 차량 제공

미군당국은 성매매 여성을 등록시키기 위해 한미 합동관리팀과 합동순찰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미군 인원이 참여하고, 미군 지프 차량을 동원하여 제공하였다. 헌병대는 단속한 여성을 픽업하여 한국 보건소로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1972. 3. 15. 제3차 주한미군 민사회의

캠프 페이지 제4미사일사령부 사령관 G.D. 테이트 주니어 대령의 보고

[1972년] 1월 한미친선협약회의 회의록은 식품 취급 기술, 위생 검사, 프리랜서 접대부 entertainer 등록, 구역 출입금지조치에 대한 주한미군의 새로운 절차(주한미군 지침 1-3)에 관한 논의, 그리고 미군이 대부업자에게 지는 빚 문제와 같은 항목들에 대한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생략]

최근, 춘천시장과 그의 직원은 근본적으로 모든 기지촌 문제 영역을 아우르는 매우 자세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생략] 새로운 프로그램은 캠프 페이지 주변의 구역을 포함하는 모든 “기지촌”을 포함하며, 기지촌 지도자들, 지역 상인들, 특수업태부들 special entertainers, 그리고 다른 특정 분류의 인력이 미군 인력과 모든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율 규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매월 지역 공무원과 만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자율 규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두 관리팀(하나는 한국의, 하나는 한/미의)과 하나의 합동순찰팀이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의 집행 기구인 한국 관리팀은 춘천경찰서의 정보과, 안전보안과, 그리고 형사과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합동관리팀은 보건과, 한국 헌병, 제4 미사일사령부 헌병 사령관과 군의관실 구성원 등으로 충원되었으며, 매월 캠프 구역 내의 모든 허가된 클럽과 다른 시설들을 점검할 것이다. 합동순찰팀은 총 네 명-한 명의 카투사와 한 명의 미사일사령부 미군 헌병, 한 명의 순찰 경찰관과 춘천경찰서에서 온 한 명의 형사-로 구성될 것이다. 또한, 미사일사령부는 한 달 동안 15일 밤을 넘지 않는 유연한 일정을 위해 평범한 군용 지프와 구별되도록 표시된 지프를 제공할 것이다.

1972년 3월은 “교육월”로, 합동 관리 및 순찰팀이 4월 1일에 활동을 시작하는 4월은 “시행월”로 지정되었다.

1975. 6. 9. 한미1군단 사령부 사령관 「성병 통제에 대한 한-미 상호 협력」 첨부 「미군 인원에 대한 공지」	
<p>II. 한미 합동 성병 순찰</p> <p>한국 지방 당국은 성병 순찰 제도를 만들었고, 미군 예방의학 인원은 이에 참가하도록 초대되었다. 이 합동 한미 합동 순찰(또는 한국 불시 순찰)은 미국이 완전히 지지하는 한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생략] 첨부된 것은 성병 통제반원이 소지하는 증명서의 견본이다.</p>	
부록 6-B	한미합동성병관리전담반원증

Pacific Stars & Stripes 1975. 4. 8., 「PM Unit Protects Soldiers' Health」	
<p>헌병대 대표가 환자를 픽업하여 한국 보건소로 안내한다. 한국 당국의 조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p>	

③ 미군 위안부에 대한 페니실린 무차별 투여 및 격리수용에 소요되는 약품 등 공급

1974. 2. 14. 주한미군 예방의약국장 제임스 해썬웨이 중령, (1. 28. ~ 2. 2.) 「답사 보고서」	
<p>6. 확인한 사항[보고서 중 약품 공급 및 미군 접촉자로 지목된 사람의 치료 관련 사항만 기재함]</p> <p>a. 충북 44 방공포여단 2 대대 A포대 캠프 엘 파소 외부의 성병 클리닉 : 65명의 등록된 매춘부들이 있다. 감염된 여성들에 대한 처치는 44 방공포여단 2대대 A포대 야전 응급 구호소에서 제공하는 약물들로 이루어졌다.</p> <p>g. 왜관 보건소와 성병 클리닉 : 감염된 여성들에 대한 처치 약물은 543 일반 진료소로부터 공급되었다.</p> <p>j. 대구 캠프 헨리, 캠프 워커 구역을 위한 성병 클리닉 : 치료는 미군 진료소로부터 공급되는 프로베네시드 1.0그램에 앞서 경구용 앰피실린 3.5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성병 클리닉의 의사는 페니실린 주사 과민성 반응으로 여성이 사망할 것을 두려워했다.</p> <p>l. 대구 동구 보건소와 K2 인근 성병 클리닉 : 42명의 매춘부가 등록되어 있었고, 치료는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의약품으로 하였다. 보건소는 주한미군이 페니실린 알려지가 있는 여성을 위해 매일 2.0g의 테트라사이클린 X3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양은 너무 적고 총 9.5g 복용이 필요하다.</p>	

n. 동구 보건소와 성병 진료소. 이 성병 진료소는 초량(텍사스 가 구역)과 하야리아 부대 주변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생략] 미군으로부터 접촉된 사람은 검사를 거치고, 만일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면 치료되지 않는다. 성병 진료소는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모든 접촉자로 하여금 병리학적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받았다.

r. 광산보건소 : 이 보건소는 광주 공군기지 인근의 기지 매춘부들을 책임지고 있다. 그들은 환자 차트도 보관하지 않고 진찰기록을 만드는 것도 꺼려왔다. 많이 지연된 뒤에, 기록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르면 감염된 여성들은 미 공군기지에서 제공되는 p.p. 플러스 프로베네시드 4.8백만 단위로 치료되거나 보건소로부터 p.p. 2백만 단위로 치료받았다.

t. 광주 공군기지 클리닉 : 120만 유닛 슈렛의 프로카인 페니실린이 네 군데에 주사되어야 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약물치료를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u. 광주 소재 전라남도청. 공중보건과장과 성병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광산과 광주 보건소의 등록, 출석, 그리고 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받았다. 역학적 치료는 주한미군이 전원시키는 모든 접촉자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

x. 군산 실버타운 성병 클리닉 : 이 클리닉은 옥구 보건소에 의해 운영된다. 354명의 등록 위안부가 있다. 치료는 적절하고 주한미군에 의해 제공된 의약품으로 이루어진다.

④‘컨택’ 명목의 미군 위안부 명단 사진 등을 보관

미군당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10항에 따라 미군 시설과 구역 밖에서는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미군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미군당국은 1967. 11. 9. 제17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미군당국은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적 조치를 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미군당국의 경찰권 행사의 범위를 구체화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은 ‘토벌’에 직접 참여하여 여성들을 단속하기도 했고, ‘컨택’이라는 명분으로 미군 검진소 등에 미군 위안부들의 사진을 받아 보관하거나 이를 게시하거나 ‘성병 책자’ 또는 ‘Hot Sheet’를 만들어 미군들에게 보게 하기도 하였다.

1973. 3. 2. 제5차 주한미군 민사회의 보고서

5. 성병은 주한미군에게 중요한 지속적인 문제의 하나로 대표되고, 이 문제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접근들이 취해졌다.

d. 접촉의 효과적인 식별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어떤 부대는 군인들이 접촉자를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검진소에 사진 파일을 붙여놓았다. 접촉 카드, 이름표, 명함은 접촉 식별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위해 시도되고 있다.

J. H. 엘리스 대령, 주한미군(오산 51공군기지 비행단 단장)의 보고

오산은 보건부서원들에게 성관계 접촉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성병 환자들을 인터뷰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환자들이 이들 성관계 접촉자들을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모든 기지박 유흥업소들에 등록과 식별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각각의 여성girl이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게 하고, 기도로 하여금 남성 동행자에게 그녀의 등록번호가 적힌 접촉자 카드를 주게 하고, 기지 병원에 식별 확정을 위한 사진 파일을 비치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토론문

“국가화된 증언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과거사 여성 피해증언을 중심으로”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두 발표는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피해자들이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어 국가 책임을 묻고 공적 기억을 쟁취해 가는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들 피해자는 1980년대 후반 냉전 종식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후 일본과 대한민국, 나아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투쟁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권리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성취해 냈으며 이는 파편화한 개인의 경험, 아래로부터의 ‘기억’을 식민주의와 전쟁 범죄, 국가폭력의 시스템을 폭로하는 구조적 문제로 끌어올렸다. 또한 이들의 소송 운동은 단순히 배상을 받는 수단을 넘어, 국가권력이 자신의 피해를 진실로 밝히는 과정이자 이를 법정의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피해자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과정이었다. 피해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가해 국가를 보호하는 법적 장벽을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돌파하려는 도전이자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토론문은 먼저 야스쿠니 무단합사철폐 한국소송과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추진한 운동 주체와 강제동원 피해자 운동을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두 소송운동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배경에 대해 공통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라는 피해자 운동 단체

야스쿠니 무단합사철폐 한국소송을 발표한 장완익 변호사는 이 소송의 대리인 단장이자, 소송 원고들이 소속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이하 보추협)의 공동대표이다. 2001년 2월 23일 결성된 이 단체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 서울지부를 그 모태로 한다. 보추협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유족, 법률가, 활동가, 연구자 등 다양한 추진 주체가 모여 결성되었다. 결성과 동시에 보추협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운동의 ‘전국화’를 이끌었다. 2000년에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연대’를 조직하고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보추협은 기록조사,

소송투쟁, 입법운동, 유골교섭, 국제연대운동 등 피해자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어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추협의 강제동원 피해자 운동은 한국 사회가 가진 강제동원 인식의 한계와 문제점의 도출, 극복 방향과 방법론의 모색, 과제와 전망까지 망라해 왔다.

2. 강제동원 유족 이회자의 피해자 운동

이 단체 창립과 활동을 주도한 이회자 공동대표는 강제동원 유족이다. 1943년 1월 강화군 송해면에 태어난 이회자는 1944년 2월 부친 이사현이 군속으로 동원되어 생이별했다. 그의 부친은 중국으로 끌려간 후 부상병 이송 중 총상을 입어 1945년 6월 11일 사망했다. 가족들은 그의 사망 사실을 몰랐고, 남편이 징용으로 떠나면서부터 친정에 머물던 이회자의 어머니는 딸의 부양을 위해 1952년 재가했다. 1975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 신청 시기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이사현의 모친은 사망 보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고향을 떠났던 딸 이회자는 그 사실을 7~8년 뒤에나 알게 되었다.

1989년 이회자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서울지부에 참가해 아버지의 사망 경위를 알기 위해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1992년 ‘피징용사망자연명부’³⁾에서 사망 기록을 처음 확인한 후 관련 기록을 더 찾아내는 데 11년이 걸렸다.⁴⁾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유족회’는 일본 후생성에 보관되어있다는 한국인 군인·군속 관련 명부의 공개를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1991년과 1993년 4차례에 걸쳐 12종의 군인·군속 명부(346,733명), 노동자 명부(3종, 114,822명)를 제공했다.⁵⁾

보추협이 피해자들의 명부 기록을 취합해 비교하면서 야스쿠니신사 합사와 유골 봉환 여부 등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공탁금 명부를 통해 미수금 기록도 발굴되었다. 또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명부 기록의 오류, 누락, 왜곡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군인·군속 생존 피해자들은 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사망했는지, 전투 현장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의 참상은 무엇이었는지 명부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증언에 담긴 단서를 좇아 연구자와 시민 활동가들은 은폐된 기록을 발굴했고, 그 속에서 잊힌 희생자들을 호출했으며,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은 피해회복의 길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다.

이회자는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의 공개 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깝게 교류하면서 방일활동(소복시위, 거리행진, 릴레이단식, 증언집회 등)을 벌였다. 피해 당사자의 공개 증언에도 부정과 모욕의 망언이 이어

3) 1971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구 일본군 재적 조선 출신 사망자 명부(旧日本軍在籍朝鮮出身死亡者名簿)』이다. 일본 정부가 패전 이후 조선인 군인·군속 사망자를 따로 추출하여 정리한 것인데, 재무부가 이를 도별로 구분하여 10권의 책자로 분철하고 위 제목으로 관리, 1972년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였다.(국가기록원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 명부 소개 참고)

4) 이회자, 「아버지 죽음의 흔적을 찾아서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기록찾기 여정」, 『내일을 여는 역사』 67, 2017

5) 국가기록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를 소장하게 된 경위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https://theme.archives.go.kr/next/victimSearch01/sub01.do>).

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회자는 유족인 자신이 부친의 강제동원 사망 피해를 입증하려면 기록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욱 기록 조사에 매달렸다. 그는 고향인 강화도에서 생환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강제동원 실상을 구체적으로 접했고, 기록 조사를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피해자의 연대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운동과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운동의 큰 동력이었다. 이회자는 2000년 미쓰비시 강제동원 한국 소송의 사무국을 맡았고, 기록조사에서 알게 된 한국으로 봉환된 유골의 가족 인도를 요구하는 ‘유골인도소송’을 제기했으며, 2001년·2003년 피해자와 유족 414명의 대규모 원고단을 꾸려 군인군속 소송을 제기하였다.

3. 군인군속 소송투쟁의 제기와 의미

발표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군인군속 소송은 일반적인 강제동원 피해뿐 아니라 야스쿠니 합사, 유골 반환, BC급 전범 및 시베리아 억류 피해 등 일본 정부가 방치해 온 문제에 대해 총체적 국가책임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다. 준비 기간만 2년이 넘게 걸렸다. 피해자들은 이름(창씨명)과 본적지 등 인적정보와 동원유형과 지역, 시기 등 피해 사실 증언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⁶⁾

피해사실을 입증할 기록 조사는 국가기록원뿐 아니라 일본 정부기관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일본 후생성(군 이력 조회, 희생자 유골의 유무와 송환여부, 미불금 공탁내역), 우정성(군사우편저금), 방위청(병적부, 사망증명서 발급 관련기록 등), 사회보험업무센터(후생연금보험), 경찰서(사망신고 등) 등 일본의 각 기관에 피해자 개인별로 작성한 관련 기록 조사 요청서를 보내고 회신을 통해 하나씩 자료를 축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활동가들의 협조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⁷⁾

이러한 준비를 거쳐 제기한 군인군속 소송은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 및 비인도적 전후처리 과정을 폭로했으며, 전사자 현창과 전쟁동원의 핵심 시설인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문제를 제기하고 합사 취소를 요구한 최초의 소송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국가’에 맞서는 한일 시민연대 평화운동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⁸⁾

4.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의 조직과 새로운 소송운동의 전개

보추협은 2006년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을 조직했다. 한국뿐 아니라 타이완, 오키나와, 일본 등 4개 지역 국제연대체로 조직된 이 단체의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민족문제연구소가 맡았다. 그리고 보추협의 생존합사자 1명과 유족 10명이 원고가 되어 2007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배상 청구소송이

6) 처음에는 군인·군속 피해자와 별개로 노무동원 피해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었으므로 노무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7) 피해 기록 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기록물들은 이회자,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찾아서-일제강제동원 피해자·유족의 기록조사 발자취』, 민족문제연구소, 2014(미간행고) 참조. 일본 시민의 군인군속재판지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후루카와 마사키, 「재한군인군속 재판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역사와 책임』 2012.7 참조.

8) 재한군인군속 소송투쟁의 의의와 도달점, 과제에 대해서는 『재한군인군속재판 보고회』 자료집,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2009.5.18. 참조.

었지만 배상액은 1엔이었다. 원고인 이회자는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는 점, 유족의 추모할 권리조차 짓밟는, 계속되는 식민지배의 가해를 멈추게 하기
위한 소송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제동원’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만
초점을 둔 진술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피해자 진술 청취는 삶 전체를 관
통하는 강제동원 피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생애사적 구술로 이루어졌다. 그와 함께
식민지배의 피해가 무엇인지, 지속적인 현재형의 피해 인식을 구체화해야 했다. 종
교적 신념이나 전통적인 장례와 추모 문화에 대한 시각도 필요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폐 운동에는 철학자, 법률가, 역사가, 문화인류학자, 민속학자, 종교인 등 다
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그리고 보추협 회원들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일본위원
회가 매년 개최하는 8월 도쿄 촛불행동에 빠짐없이 참여해 20년째 피해 사실의 공
개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도 한일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 『안녕, 사요나
라』(2005)는 한국과 일본에 야스쿠니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렸고, 일본 전국 유족
증언 집회, 김치강습회 등을 통해 일본 시민 사회의 동참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강
제동원 피해자와의 사회적 연대감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보추협 회원들은 대부분 50~60대에 유족회 활동을 시작해 이제 80대 중반을 넘어
서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회원들도 많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녀 세대마저 고령
화로 접어든 시점에서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2017년 『빼앗긴 어
버이를 그리며-강제동원피해자 유족 증언집』을 펴냈다.⁹⁾

유족들은 고아, 식모, 구두닦이, 막노동꾼,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가족의 냉
대와 사회적 차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객관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피해 관
련 기록을 해석해 주고 제적등본에 기록된 가족의 얽힌 삶을 풀어주면서 대화하듯
구술을 이어갔다. 이 증언집의 출판을 주도한 이회자는 발간사에서 강제동원 유족
들의 이야기는 “자식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부끄러운 삶의 고백”이면서 “그리움과 고
통 속에 살아온 자식들이 남기는 마지막 증언”이자 “일본을 향한 유족들의 영원한
고발”이라고 했다.

야스쿠니 무단합사철폐 한국 소송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투쟁의 목적은 그들의 피해를 제대로 기록으로 남기는 그 과정 자체인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 함께 연대하고 기억하는 사회적 노력이 피해자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판
결과 피해회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발표자의 마지막 바람대로 유족들
이 살아계시는 동안 소송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역할은 이제 우리 사회의 몫이다.

9)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의 증언은 『빼앗긴 아버이를 그리며-강제동원피해자 유족 증언집』, 민족문제연
구소, 2017 참조.

6. 공통 질문

장완익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한국에서 진행된 선행 소송으로 성취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불법성 인정, 국가면제 극복 판례를 제시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선행 소송을 통해 확정된 대한민국의 책임과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미국의 공동불법행위와 그 책임을 최초로 묻는 소송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러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발표문에서 충분히 언급하지 못한 이러한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과 연혁적 흐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야스쿠니 무단합사철폐 한국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0년대 일본 시민사회의 전후보상운동과, 2000년대 전후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인 과거청산의 흐름과도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판례뿐 아니라 일본에서의 소송 성과와 한계, 한국의 과거사 관련 입법 과정과 과거사위원회 활동,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이후 판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

하주희 변호사 발표문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가 폭력 시스템과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어떤 걸림돌과 디딤돌, 또는 돌파구가 있었는지, 미군 위안부를 둘러싼 사회운동, 사회인식의 변화 배경과 극복 과제를 언급해 주시길 바란다.

토론문

세션1 과거사 소송 운동의 현주소 토론문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안녕하세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공부하고 또 관련 사업을 기획·진행하는 것이 직업인 박정애입니다. 오늘 행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 연구회 이사진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회 학술대회 주제로 야스쿠니 무단합사철폐 한국소송과 '미군 위안부'의 주한미군 소송에 대해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을 작성해주신 장완익·하주희 변호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로부터 비롯된 우리들의 고민과 실천 과제의 감각들을 연대 주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함께 자주 모이고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다만 발제문을 읽고 제가 적절한 토론자인지에 대한 고민은 들었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연구와 활동 등에 크고 작게 관여해온 자로서, 그사이 접해왔던 당사자분들이나 그 가족에 대해 어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미안함? 책임감? 어쩔 수 없다는 마음?). 그리고 작년에 '미군위안부 소송 협력연구자 모임'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을 때, 이번에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뭐라고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소송의 원고분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거나 기록해주지 않았지만, 나는(우리들을) 직접 봤고, 싸웠다'라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번 소송의 의미 중 큰 것 하나는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공론장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목격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경험한, 그곳에서 있었던 범죄 사실과 이에 대한 당시 공권력의 부작위를 말씀하시고 싶은 만큼 말씀하시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토론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만, 젠더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저에게 법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우선 기존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엘리트 중심 통치 사회에 맞게 설계된 '법의 언어'를 믿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기에는 '양상한 언어'인 주제에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법에 의지하게 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법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정의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들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법적인 차원의 최전선에서 이행기 정의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치도리카후치에 방문하였을 때, 시설 관계자 분이 미송환된 전 일본군의 유

골을 현지에서 수습해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의 유골만요. 그래서 조선인과 대만인 등도 일본군의 이름으로 전쟁터로 끌려가서 일본인과 섞여 있다가 사망했을 텐데 어떻게 일본인 유골만 수습하냐고 물었습니다. 관계자 말이 유전자 분석 방법으로 일본인과 그 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뭘 히틀러가 아리안족 올려치기 하던 시절의 이야기냐, 의아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에피소드는 1957년에 조선인, 대만인 등 피해자를 ‘천황의 군대’로서 무단 합사했던 야스쿠니의 조치와 상반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만큼 ‘일본을 위해 싸우다 신이 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했지 않았을까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식민지민의 심정을 외면한다 해도, 후손들의 반대운동이나 법정투쟁을 바라보는 이른바 ‘신’의 뜻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야스쿠니나 치도리가후치, 일본정부의 불협화음 조치들에 대해 일본 사회는 어째서 질문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소송의 결과가 변함없는 야스쿠니의 입장이나 일본정부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족들의 바람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야스쿠니 무단 합사가 철폐되기를 바랍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미군 위안부’ 소송에서 이 피해의 성격은 일본군‘위안부’제도에 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듯 합니다. 곧 일본군‘위안부’ 소송의 경우, 이 사안이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개설된 위안소 제도라는, 광범위한 정의를 전제에 두고 피해 당사자가 겪은 무력행사, 폭력, 강간 등 당대 법률에 비추어도 명백하게 ‘불법’적 요소가 강조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사자가 위안소에 있던 시기와 지역의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제도적 성격을 말하기 보지요. 그런데 ‘미군 위안부’ 소송은 성매매 금지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미군이 독점 이용하는 성매매 시스템을 제공하여, 불법적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또 방조했는지, 그리고 미군이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 설명하는 것에 공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 사안을 보는 렌즈를 어떤 각도에서, 얼마나 가깝고 멀리 대고 바라보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공창제’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주장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법률상 규정된 성판매 합법 여성(식민지 시기에는 오직 ‘창기’만이 그러한 지위였습니다)이라는 인식 구축에서 벗어나 합법이든 비법이든 불법이든, 국가가 공인하고 관리하는 성매매 시스템의 차원에서 본다면 ‘미군 위안부’제도도 ‘공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일본은 패전 이전까지 합법 성매매 제도를 ‘악’으로 보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교란하기 위해 일본의 정치세력권 지역에서는 ‘공창제(=창기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창제(=작부/예기/특수부인/위안부 등의 용어를 활용한 성매매 관리)’를 시행했습니다. 관동청의 일본 경찰이 관동주에서는 ‘나카이(仲居)’가 실질적으로 일본 본토의 창기와 같다고 국제연맹 여성아동매매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던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군 위안부’의 피해 사례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공인하고 관리한 성매매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공권력의 방조가 이루어졌는지 잘 말해줍니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법원이 주한미군의 책임 또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한편 강제적인 성병검사와 성병격리시설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성병검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606주사’를 성병 예방, 치료, 또는 낙태 주사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몸에 가해지는 의료적 조치들이 얼마나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잘 말해줍니다. 제가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도항관계 자료집』에서는, 여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 굉장히 많은 전염병 예방 관련 주사를 맞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편 같은 마약이 여성들의 병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약물의 오용과 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미군 위안부’ 소송과도 연동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종차별 없이 성매매를 제공하라”는 권고가 이번 소송에서 불법을 따지는 것에 어떠한 근거 논리를 제공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 소송의 결과가 이후 어떠한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션 2]

인식 확장을 위한 연구 동향

사회

장수희(동아대학교)

발표

인도주의 국제규범의 전유와 근대 한국의 젠더 통치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국가화된 증언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과거사 여성 피해 증언을 중심으로

송혜림(연세대학교 비교문학연구소, 5·18열매)

토론

예지숙(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최성용(성공회대학교)

인도주의 국제규범의 전유와 근대 한국의 젠더 통치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인도주의 국제규범의 전유와 근대 한국의 젠더 통치

2026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학술대회

장원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6. 2.

문제제기

- 인도주의적 국제규범 형성을 배경으로 한국에서 전개된 관련 담론을 분석하고 그 작동에 대해 해명
- 전통적 국제법은 주권국가를 전면에 내세움 → 19세기 말, 20세기 초 개인이 국제법 대상으로 부각, '인도주의' 담론의 국제규범화 → 1948 '세계인권선언' 등장.
 - 이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근대 한국'은 여기에서 동떨어져 있었나?
 - '제국' 중심의 '인도주의'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 긍정 X, '인도주의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한 핵심 도구', '제국적 인도주의 시대' - Barnett 2011)
 - : '인도주의 국제규범' 용어 설정, 이를 통해 식민지와 국제질서 간 상호관계 및 그 의미를 살핀다
 - "단순한 서양 근대개념의 이식이 아니라 한국 근대의 경험을 반영" (허수 2012)
 - '수용' 아닌 '전유'. 식민지인의 입장에서 재해석, 번역, 새로운 의미 부여.
- 젠더관점의 필수성: 인도주의의 적용 대상은 '비(非) 백인성인남성'
- 국제규범에 바탕한 인도주의 담론은 근대 한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 담론은 담론의 대상이 된 이들의 자기 인식, 실천 및 관련 논의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 그리고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
 - '젠더 통치' 분석. 담론이 전개된 과정, 긴장, 갈등에 주목.

선행연구 ① 인권과 국제규범

- 인도주의의 유관개념: 인권
 - 인도주의: '지역이나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어 먼 곳에 있는 낯선 타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조직된 실천'
 - 인권이 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도주의는 도덕적 규범과 감정으로 주의를 돌린다(Barnett)
 - 인권(human rights) [≠ 天賦人權, 자연권(natural rights) - '민권']
 - 국제사회가 국제조약, 국제기구 등 활동을 통해 공동으로 보장하는 권리체계
 -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거쳐 1960, 70년대에 현재와 같은 개념과 영역 확립(Moyn 2010, "인권의 역사화")
 - 한국 근대사와 '인권'연구
 - 정용화(2001): 독립신문 대상으로 전통 유교사상의 '연속과 단절' 주목
 -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국가인권위원회, 2019)
 - 김태웅: 조선후기부터 임시정부까지 인권사상 발전이 해방과 신국가건설 이끔
 - 서호철: 식민지기 조선인의 인권을 둘러싼 제도와 실천, 담론을 넓게 살핌. 법령(특히 고문 폐지 등 사법제도) 주목
- ← 현재의 '인권'을 과거에 소급할 수 있는가? '인권', '자연권', '민권' 개념 구분 필요

선행연구 ① 인권과 국제규범

- 국제규범의 수용에 따른 '인권' : 국제법, 조약 관련 연구
 - 조시현: 인신매매 관련 국제법 역사 정리, 일본의 1921년 조약 가입 설명
 - 정진성: ILO 조약 검토, 특히 1933년 강제노동 금지조약 주목
 - ← 일본군'위안부' 문제제기 활동과 연결, 국제규범 자체를 절대화
- 국제규범을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 상대화한 최근 경향
 - 박정애: 국제연맹의 동양 인신매매 조사위원회 활동 및 1921년 인신매매 진압 조약의 식민주의적 성격 주목
 - 김은경: 인신매매 억제 논의가 여성을 타자화, 장애화했음을 지적
 - ← 시론적 상태. 구체적, 실증적으로 뒷받침될 필요.
 - CF. 박진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 금지된 황린성냥의 퇴출 주목

선행연구 ② 시기·주제별 수행주체

- 반노예제 담론
 - 1890년대 『독립신문』의 신분제, 노비제 비판(강영심)
 - '국민' 창출 담론의 구성(김소영)
 - ← 국제규범(문명화+식민주의) 및 정부의 역할, 당대 언론의 전체지형 검토 필요
- 여성·아동노동자 보호 담론, '임금노예' 비판
 - 공장법 시행 요구 주목(선재원, 이상의)
 - ← ILO 관련 담론 전개 분석 필요
 - 좌우 협동전선 해석과 '또다른 사회주의의 국제적 동향'(윤덕영)
 - ← 젠더를 시야에 넣어, 근대 사회운동의 전개양상·인식지형 검토 필요

선행연구 ② 시기·주제별 수행주체

- 성매매 근절주의, 폐창운동, '백색노예' 비판
 - 기독교 중심의 공창폐지운동(윤은순)
 - 재조일본인 및 여러 그룹의 공창폐지운동(송연옥)
 - ← '공창폐지' 주장의 사회적 응답, 국제연맹 조사의 영향 고려 필요
- 전시체제기 가족국가론
 - 여성에게 요구된 역할 분석(가와 가오루, 정진성, 권명아)
 - 여성·아동 동원의 실제(김미정, 정혜경)
 - ← 일본이 인도주의 전유의 주체로 등장: 새로운 국제질서와 '반노예제'의 전쟁 주장에 주목

선행연구 ③ 통치성 분석, 젠더 배치

- '통치성'과 한국근현대사 해석
 -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김진균, 정근식)
 - 식민지 민중이 완전히 통치에 포섭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 Cf. 민중의 다성성(多聲性)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 '근대이행기' 젠더의 배치와 식민지의 위치성
 - 남성의 형식적 자유 성취와 여성에 대한 착취 지속(페데리치)
 - 식민지, 여성에 대한 착취는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의 핵심(미즈)
 - 인도주의 담론 구성이 드러낸 젠더 배치와 식민지 여성의 대응 주목

👁 연구 과제

국제규범에 기반한 인도주의 담론의 전유가 젠더 배치와 제국주의 권력의 작동을 보여준다는 점을 규명 / 담론의 경합과 효과에 대해 분석

논문구성 (목차)

- 서론
- I. 국제적 반노예제 규범 전유와 노비 해방 담론 (1880~1910년대)
 1. 국제규범 인식과 노비제 변화의 접점
 2. 노비의 변동과 성별에 따른 차이
 3. 노비 문제를 둘러싼 담론의 자장
- II. 국제노동규범 적용과 여성·아동 보호 담론 (1920~1930년대 전반)
 1. 국제노동규범 소개와 여성·아동 보호 담론의 전개
 2. 국제노동규범 관련 여성·아동 보호 담론 전개와 균열
 3. 공장법 시행 요구와 조선
- III. 성매매 근절주의의 국제적 흐름과 인신매매 비판 (前史+1930년대)
 1. 여성 인신매매의 구조와 비판의 전개
 2. 국제연맹 인신매매 조사와 공사창제 개정 요구
 3. 인도적 인신매매 비판의 전개와 모순
- IV. 전시 신질서 속 가족국가관의 젠더 배치 (1938~1945)
 1. 국제질서의 전환과 가족국가관의 절대화
 2. '가족국가'의 젠더 질서
 3. '반노예제'의 전쟁 속 식민지의 모순
- 결론

I. 국제적 반노예제 규범 전유와 노비 해방 담론

1. 국제규범 수용과 노비제 변화의 접점

1) 조선 정부의 국제규범 인식과 정책 변화

- 비엔나 선언(1815) 이후 반노예제, 노예매매 금지: '문명'의 기준
- 조선, 1880년대 서구 각국과 수교. 반노예제 인식(『한성순보』, 『한성주보』)
 - 당시 조선의 노비는 slave로 번역됨
 - 서구의 노예, 러시아 농노 모두 조선에 '노비'로 소개됨
- 1886년 「사가노비절목」 반포. 노비신분의 세습 금지.

2) 노비제 폐지와 제도 정비

- 갑오개혁, 노비제 폐지
 - "公私奴婢之典, 一切革罷, 禁販買人口事"
- 제도로서의 혁파: 적도처단례(1896), 형법대전(1905)에 반영

I. 국제적 반노예제 규범 전유와 노비 해방 담론

2. 노비의 변동과 성별에 따른 차이

1) 공노비의 변동과 기(妓) 제도 변화

- 관노비의 필요성: 관노, 관비, 기생의 「관노비안」 1900년대초 작성사례
- 관노비 유지 1890년대 후반 다수 보도, 비판됨
- 성별 간 다른 정책 및 기생 대구속신(代口贖身)의 관행
 - 인신매매로 포착, '수양녀'로 지속
- 기생에 대한 제도 변화,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반포(1908)

2) 사노비의 변동과 '여종'의 존속

- 19세기 노비 연구: 사노비의 감소, 비(婢)의 매매 존속 공통 지적
- 외국인의 기록: "한국의 종은 모두 여자"
- 갑오개혁 이후의 노비매매문기: 대부분 여성
- 여성노동의 경우 기존의 노비라는 형식 지속
- 1890~1900년대 사노비 유지 비판 보도: 여종, 세전비에 집중

I. 국제적 반노예제 규범 전유와 노비 해방 담론

3. 노비 문제를 둘러싼 담론의 자장

1) 노비 비판과 해방 촉구

- 노비해방 정책이 부재한 상황, 언론의 계몽 역할 강조
- '노예의 법이 남아있으면 노예로 대접받는다' 국제적 문명 기준 제시

2) 자립의 강조와 '국민' 창출

- 노비속량 미담 기사 1900년대 말 집중
- '자립'과 '독립'에 대한 강조. '국민 만들기' 성격
 - 납세의무 강조, 인구조사 노력
- '국가'의 부재: 노비해방 둘러싼 갈등 등장
- 총독부, 노비제를 '악습'으로 지목하고 윤리적 비판, 노비 감소 선전
 - but 일제시기에도 노비매매 비판 기사 등장

II. 국제노동규범 적용과 여성·아동 보호 담론

1. 국제노동규범 소개와 여성·아동보호 담론의 전개

1) 국제노동규범 소개

- 국제연맹과 ILO 창설, 일본 적극 참여 → 조선인의 높은 관심
- 조선노동공제회, 『공제』(1920)
 - 파리강화회의의 노동 규정 번역 게재, 소련 외 노동운동 주목

2) 여성·아동보호 노동 담론의 전개

- 1919년 ILO 제1회 총회 '부인 및 아동 야간작업 금지 조약'
- 일본, 메이지시기부터 공장법 시행. 여성·아동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핵심
- 조선에서 여성·아동노동에 대한 담론 구성 시작
 - 여성의 임금노동 확대를 '여성의 직무 소홀'로 지적
 - 아동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천도교 소년운동 주장



II. 국제노동규범 적용과 여성·아동 보호 담론

2. 국제노동규범 관련 여성·아동 보호 담론 전개와 균열

1) 민족협동전선과 여성·아동 보호 담론

- 여성·아동 노동착취에 대한 비판: 협동전선의 공동 주장
- 소련 노동규범과 ILO 국제노동규범 유사성
- 신간회, 근우회, 관련 단체들의 강령, 정책안에 반복 등장

2) 노동자들의 생활상 요구와 보호 담론의 균열

- 여성노동자가 혁명적 노동운동을 위한 조직대상이 됨
 - 그러나 실제 여성노동자 쟁의에서 주요 요구조건은 '임금'
 - 야간작업 금지는 요구 X ← 성과급제 현실
- '여성노동자 보호' 담론의 성격
 - 여성의 위치를 공장이 아닌 가정으로 배치, 여성노동 저임금 정당화
 - 공장 내 성폭력에 대해 "문제는 여자의 야간취업이 원인"이라 지적
 - '보호'와 통제: 인신구속의 공장 기숙사제 시행 → "선불제 고용소녀들"의 도주

II. 국제노동규범 적용과 여성·아동 보호 담론

3. 공장법 시행 요구와 조선

1) 여성·아동노동의 증가

- 일본 내지에서 1929년 7월부터 여성·아동 심야노동 금지
- 1930년대 전반 대자본 섬유산업 조선 진출 증가, 총독부 환영
- 1930년대 조선 여성·아동노동 증가

2) 여성·아동 보호 노동입법 요구

- 공장법 시행 둘러싼 총독부 내의 이견(경무국 VS 식산국)
- 조선 언론의 입법 요구, 특히 『동아일보』
- 생존권 요구, 국민위생과 모성 강조 등으로 변주
- 인신을 구속한 자본 측의 '보호' 비판, '진정한 보호' 를 주장

III. 성매매 근절주의의 국제적 흐름과 인신매매 비판

1. 여성 인신매매의 구조와 비판의 전개

1) 여성 인신매매의 구조와 성격

- 일본 공사창제 조선 이식(1916). '인신매매'는 성매매와 연결된 것으로 의미 변화.
- 여성의 자유의지 강조 but 당시 법제는 여성 행위능력 인정 x. 종속적 상황에서 유입.
 - 외출 제한의 인신적 종속, 전차금 부채관계의 경제적 종속
- 본국과 식민지 차이: 창기 허가연령 및 '자유폐업' 문제

2) 공사창제 및 여성 인신매매 비판

- 인신매매 관련 국제규범 형성
- 일본, 1921년 '여성 및 아동 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 조인
 - 연령문제와 식민지에 대한 적용 유보. 1925년 비준
 - 비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공창폐지운동 전개됨
- 1920년대 조선에서 기독교 중심 공창폐지운동 전개
 - '도덕상', '인도상', '위생상' 이유로 공창폐지 주장(오금선)
- 공창폐지 주장에 대한 반응
 - 기독교의 공창폐지 주장에 동조 X
 - 구체적 지역민의 목소리는 긍정(ex. 완도부인회)

Ⅲ. 성매매 근절주의의 국제적 흐름과 인신매매 비판

2. 국제연맹 인신매매 조사와 공사창제 개정 요구

1) 국제연맹 조사위원회의 조선 방문

- 1931년 국제연맹 동양 인신매매 조사
 - 문제제기는 '국제적 인신매매' 한정, 공창제 시행은 '국내문제'로 간주
- 조사위원회 조선방문: 중국에 있는 조선인 여성 지적, 여론 환기

2) 공사창제 개정 및 폐지 요구

- 조사위 방문 후 일본
 - 공창폐지 여론 ↑, 1933년 창기취체규칙 개정. 외출금지 삭제
 - 일본, 1933년 국제연맹 탈퇴 통고 이후에도 여성·아동매매 자문위원회 등 하부조직 참여.
- 1934년 조선, 공창폐지 여론 집중
 - 『신가정』 1934년 7월 '인신매매특집호'
 - 김정실, 마스다 미치요시의 글을 활용하여 주장 전개(『신가정』 및 동아일보 연재)
 - 공창폐지론 중 식민지배 비판 맥락 사라짐, '제국의 인도주의자' 논리를 따르게 됨
 - 일본의 폐창방침 결정, 조선 언론 보도: 오보. But 정정기사 없음
 - 1934년 12월 조선 가사자시키창기취체규칙 개정. 외출금지 삭제

Ⅲ. 성매매 근절주의의 국제적 흐름과 인신매매 비판

3. 인도적 인신매매 비판의 전개와 모순

1) 인신매매 비판과 여성·아동 보호

- 법개정운동으로 전개: 공창폐지 및 '아동학대방지법' 실시 요구
- 인도적 이유: 1930년대 대부분 논자의 근거가 됨
- 국제적 운동을 장악한 성매매 근절주의 담론: '추업부' 관점, '공사창'에 대한 동정과 '멸시', '박멸' 대상으로 인식
 - 여성을 가정에 배치, 가족질서 보호
 - '추업부' 관점은 당시 '공사창' 당사자의 발언에 내재화되기도 함

2) 공사창제 폐지 담론의 모순

- 대다수 지식인들, 근절 주장에 동조 ← "사회적 해독물이라 하여 증오와 천대로만 대한다면 이것은 적지 않은 문제"(오기영)
- 당대 창기·작부의 집단행동: 동맹파업. 폐업 아닌 대우개선 요구
- 근절주의 담론의 성 관리 체계 공모: 생존을 위한 요구는 '타락한 목소리'로 간주
 - 정상가족을 위한 젠더 배치 강조 및 이를 위한 법질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

IV. 전시 신질서 속 가족국가관의 젠더 배치

1. 국제질서의 전환과 가족국가관의 절대화

1) ILO 탈퇴 전후 '노동보호' 입법과 변화

- 중일전쟁 발발 후 ILO 탈퇴로 방침 전환, 1938. 11. 일본 ILO 탈퇴 선언
- 탈퇴 선언 2달 전: 1938. 9. 1.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 시행
 - 전시 하 생산력확충계획 일환
 - 14세 미만 및 여성노동자 갱내작업 제한 : 여성·아동 노동자보호법규의 성격. 일본과 '보호광부' 최저연령 차이.
- 탈퇴 후: 여성 갱내작업 허가(일본 1939, 조선 1941)
- 1939 <공장취업시간제한령> - 1일 12시간 이상 취업금지. 해석? '보호' / 12시간 노동의 법적 허용

2) 신질서 수립과 가족국가관의 절대화

- ILO 탈퇴 선언 다음날 '동아신질서' 발표, 1940년대 '대동아공영권' 주장
- 신 국제질서에서 인도주의의 담론의 위치: 어휘 전유, 개인주의 부정, '가족국가' 강조, '팔굉일우'
- 일본, 전쟁수행을 위한 사회정책 채용. '현대 사회복지제도 원형의 형성'
- 조선 지식인들 일부 지지
 - 장덕수, 사회정책 강조+가족국가론 논리 병렬제시
 - 의무교육 촉구

IV. 전시 신질서 속 가족국가관의 젠더 배치

1) 식민지 모성의 배치

-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 강조. 자질향상, 내선일체화 정책 선전

2) 여성 노동 동원의 강화

- 1943. 10.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요강: 남성 취업업종 제한
- 유산계급 미혼여성이 주요 선전대상. 여자근로정신대- "시집가기까지 동안을 국가를 위해" "여공원이 된다 할지라도" 긍지를 갖고 일하도록 한다

3) 전시 성 관리 질서와 동원

- 성 동원: 전쟁수행을 위한 역할로 정당화. 후방 접객업 통제와 함께 전시동원을 위한 산업, 자원, 사람의 배치와 관리가 이뤄짐.
- 군부, 국가행정과 같은 국가적 책임 + 인도주의를 말하며 식민지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국제법 질서 또한 폭력의 구조와 엮여 있음
- 젠더 배치: 일본군·위안부에게 요구된 '황민화' 및 '여성의 일' 전반에 대한 차출

4) 아동·가족보호정책 시행과 효과

- 전시체제기 아동 관련 사회정책 담론
 - 고아원(민간 이양) - 군인과 '산업전사' 공급 기관. "(나는) 이미 고아가 아닙니다"
 - '불량소년'(1942 조선소년령, 조선교정원령) - (군인으로서) "일반인이 미치지 못하는 장점을 발휘"
- 가족수당 지급 : 주로 공무원 대상 시행. 관료 포섭 유인책, 호주제 강화 효과
- 1944 조선구호령 :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 필요성
- 전시체제기 식민지 상황은 인도주의의 이중성과 부정적 측면, 모순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건이 됨

IV. 전시 신질서 속 가족국가관의 젠더 배치

3. '반노예제'의 전쟁 속 식민지의 모순

1) 대동아공영권 주장과 반노예제 담론 활용

- 일본 중심의 국제기구로 '대동아연맹', 대동아회의(1943) 개최, 선언 발표: 대서양헌장(1941)에 대응
 - 서구 제국주의가 아시아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다고 비판.
 - 조선, 대만과 같은 식민지는 누락. 일본국민의 일원이므로.
 - 대동아선언 2주 후 카이로선언 발표: '조선인민의 노예상태' 지적 → 조선의 상황, 긴장의 핵심
- 당시 조선에서 나타난 반노예제 담론: '인도'를 근거로 한 영·미 비판. 반복적 재생산.

2) 여성 동원에 대한 민중 반응과 식민지 '양적 동원'의 구조

- 유언비어를 통해 포착된 반응: 동원을 피하기 위해 결혼시키라는 유언비어
 - 당시 실제로 결혼이 격증했다는 언론 보도, 동원을 피하려 결혼했다는 구술.
- 여성동원 유언비어의 특징: 연령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가 다수
 - 연령 문제는 국제규범의 중요 쟁점
 - 당시 연령이 동원 기준이었고, 이것이 민중에게 의식되어 등장한 발언.
 - 연령 설정의 1년 차이로 수백만이 동원 대상에 포함됨 → 본국과 식민지 간 차별은 '양적 문제'로 드러남

결론

- 국제규범에 바탕한 인도주의 담론: '타자의 삶에 개입하는 권력'이 조직화된 실천으로서 나타남
-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도주의 담론: '非 백인 성인 남성', 식민지 조선의 여성과 아동에 대해 가족과 사회 속의 적절한 위치를 제시
 - 국제규범에 기반한 인도주의 담론을 통해 생산된 젠더 통치 / 균열 발생
 - 조선인 지식인의 전유를 통해 재해석, 의미 부여 / 경합과 갈등
 - 반노예제: 균질한 개인을 생산하려 함 / 노비 혁파에서 성별 간 차이 발생.
 - 여성·아동노동 보호: 이들을 약자로 규정하고 가정으로 그 위치를 배정 / 여성노동자 파업에서 '보호'는 주요 목표 X
 - 성매매 근절: 가족 바깥에 있는 여성에 대한 '추업부' 관 / '폐업은 곧 아사', 창기의 대우개선 요구
 - 전시체제가 일본의 인도주의 전유: 가족국가관을 통한 황민화 강조와 젠더 배치, '반노예제의 전쟁' / 보호의 동원의 동시성, '유언비어'에서 나타나는 수련거림

결론

- 인도주의 담론이 균열을 보이며 재현한 이들은 생존의 위기와 모순적 현실 속에서 구체적 성별과 신체를 가진 인간
- 그럼에도 국제규범은 '인도주의'의 실현을 주장, 요구하는 배경
 - 국제질서에서 '예외'로 간주된 자들의 '인도주의' 주장
 - '인도주의', '인권'을 말하는 위치성의 중요성
- 해방 직후의 변화
 - 북한, 여남 동등 노동권 및 동일임금 권리 규정, 공사창 및 기생제도 금지(1946,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 남한, 공창제 폐지(1947 결정, 1948 시행), 근로기준법(1953. 1월 8시간 노동, 13세 미만 사용 금지, 여성과 18세 미만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국가화된 증언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과거사 여성 피해증언을 중심으로¹⁾

송혜림

(연세대 비교문학연구소, 5.18 열매)

1.

한국은 한세기 내에 식민지배와 해방, 미군정 시기와 한국 전쟁, 군부독재의 지배를 압축적으로 겪었다. 권력에 의한 학살과 폭력이 자행되고 그 진상이 은폐·조작될 때, 진실을 밝히는 목소리는 바로 증언이었다. 학살의 생존자나 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족과 동료를 잃은 남겨진 자들은 드물게 공적 발언을 하거나 제도적인 방식으로 피해를 고발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전까지 국가폭력에 대한 고발은 반체제적 행위로 철저히 금기시 되었으므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실천만이 근근이 이어져왔다. 직접적인 증언의 형태가 아니어도 폭력과 피해의 흔적들은 ‘흉흉한 소문’에 담기거나 문학·미술·연행 등 예술에 깃들었다.²⁾ 민중이 겪은 국가폭력의 기억은 국가에 의해 장악된 ‘말’의 공적 장 저변에서 다변화된 양식으로 증언을 꺾고 있었다. 출처가 모호하고 검증도 어려웠으나 이러한 증언들은 민중을 공식 역사와는 다른 기억과 감각으로 연결했던 것이다.

증언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출현할 수 있던 기반은 90년 전후의 시대적 변화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1) 본 발표문은 발표자의 박사학위 논문 「국가화된 증언 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과거사 피해 증언에 관한 제도·담론·정동 분석」(2025, 연세대학교)을 재구성하여 작성되었다.

2)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창일·나간채 외 공저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역사비평사, 2004)가 있다. 이 책은 국가의 기억에 대한 억압과 망각의 강요에 대하여 기억투쟁의 목적으로 전개된 4·3과 5·18의 다양한 문화운동을 종합, 분석한다.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상, 다큐멘터리와 영화 속 기억 재현의 양상을 당대 정치적 지형과 관계지어 설명하며, 추모제와 위령제 또한 기억투쟁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증언은 문화운동이 창작의 중요한 재료로 활용하고 증언이라는 양식을 효과적으로 차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운동과도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증언의 서사나 증언이라는 행위 자체를 재현하는 2차 작업들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증언의 수행 또한 광의의 문화운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작했고 국외로는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냉전의 이념적 대립이 약화되면서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민족 및 종교 간 내전과 분쟁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국제적으로 ‘인권’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전쟁 범죄와 민간인 학살, 전시강간 문제 등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위해 국제전범 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일본의 식민과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아시아의 탈식민 담론과 운동에도 힘이 실렸다. 동시에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빨갱이’와 ‘폭도’로 낙인 찍혀왔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과거 국가폭력 피해 증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이래, 90년대에는 국가가 통제해온 ‘진실’과 ‘공식역사’를 반박하는 기억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명예회복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국가에 요구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과 함께 국가폭력의 재생산 구조를 타파하기를 촉구했다.

증언이 ‘폭로’의 형태로 사회에 돌출한다는 사실은 증언 자체가 공적 발화자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한 이들의 양식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이 청취되고 인정받는 것은 이들의 경험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훼손된 정의를 회복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한국의 국가폭력 피해 증언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1990년대는 다양한 피해자 운동들의 거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대였다. 피해의 집단적 구제를 위해 과거사 청산 작업은 개별 사안별로 청산 법률·법안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제적으로 부상한 ‘이행기 정의’ 담론은 국가의 청산 방식의 기초를 형성했지만 법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공적 기록과 증거가 조직적으로 위조되거나 은폐된 국가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데 당사자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법률적 권한을 위임받은 청산기구를 통해 ‘피해자’ 자격을 인정 받은 이들만이 법률이 규정한 배·보상이나 행정 지원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한국에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전반적인 방식은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피해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치우쳐 있던 셈이다.

그러나 국가폭력 사건이 ‘민족의 비극’이나 ‘명예로운 항쟁’으로 역사화되고 낙인 찍혔던 이들이 명예를 회복하며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면 청산의 작업은 완수된 것일까? 현실은 부정적이다.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고 ‘역사’가 된 증언들 사이를 뚫고 출현하는 또 다른 증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증언은 ‘민족의 비극적’이나 ‘민간인 대규모 학살’, ‘역사적인 투쟁’ 등 공식화된 역사 서사에 누락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국가에 의해 ‘해결’되고 ‘청산’된 과거사 영역에 여전히 밝혀져야 할 폭력과 억울함, 진실이 놓여 있다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증언들은 국가에 의해 ‘적합한’ 피해로 인정 받은 증언들과 이로부터 쌓아올려진 역사의 진실에서 배제되는 존재들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때의 증언‘들’은 단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개별 사건에 대한 증언 연구는

증언의 수집과 해석을 통해 비가시화된 피해 사실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의 공백을 보충하거나 문제 해결의 긴요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양적 증가와 연구가 성취한 사회정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증언 그 자체의 규정과 담론을 분석하는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이는 증언이란 특정 양식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 합의된 그 믿음이 무비판적으로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피해 증언’에 대한 논쟁적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증언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명하게 여겨지는 증언의 정의와 규범이 ‘증언자’들로부터 구축된 것이 아니라 증언을 ‘요구’하거나 증언을 ‘승인’하는 권력에 의해 선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말이다.

증언에 관한 1차, 2차적 연구들이 활성화된 반면 국내에서 증언 자체를 메타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은 약했다. 특히 증언을 매개항으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과거사 문제를 비교하거나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는 각각의 사건이 지닌 고유성을 중시하는 연구 경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언의 메타 연구보다 개별 사건의 규명이 더 시급하게 요구되었던 시대적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일본군‘위안부’와 4·3, 5·18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가 시행되고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개별 사건의 청산 방식이 초래한 결과를 비판하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이는 여러 사건들을 교차적으로 분석하여 개별화된 방식으로 처리되어 온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사적 토대가 되어준다.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증언 연구는 ‘증언의 (규범적)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아니다. 그보다 증언이 생성되고 관리되는 체제에 깃든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한 사람의 언술이 국가폭력 피해 증언으로 승인될 때의 기준과 검증의 규칙, 이러한 절차가 제도화될 때 강화되는 승인 주체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증언을 청취하거나 배척하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감각을 형성하는 정동 정치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증언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언의 정치적 힘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행위가 특정 증언을 배제하는 폭력을 지속하는 데 공모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언의 수행성을 묻는 질문은 더욱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져야 한다. 증언은 무엇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그 규정은 어떠한 조건들 속에서 형성된 것인가. 이러한 규정이 증언에 요구하는 규범은 무엇이며, 그 규칙에 의해 배제되는 증언은 누구의 것인가. 특정 증언을 승인하는 권력이 집중된 곳은 어디이며, 권력에 의한 증언의 선별과 배제는 어떠한 사회정치적 효과를 만들어내는가. 또한 증언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특정한 조건 속에서 증언(자)의 정동은 어떻게 제약되거나 전유되고 있는가. 증언을 청취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감각과 역량은 어떤 분할선에 따라 한계지어 지는가.

2.

위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가 초점화한 증언은 ‘피해 증언’이다.³⁾ 과거사 피해 증언은 당사자가 경험한 피해를 진술하는 증언 일반을 의미한다. 피해 증언은 피해 사실 확인의 기초적인 방식이면서 피해를 입증할 공식적인 기록이 은폐된 국가폭력의 경우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과거사 청산이 제도화되면서 ‘피해자’라는 법적 공인을 부여받는 데 있어서도 피해 증언은 중요했다. 그러나 증언 체제는 선규정된 규칙과 기준에 따라 피해 증언을 검증하고 승인하기 때문에 증언의 내용과 형식도 이 조건들을 의식하며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피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실이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주변적’인 이야기는 증언 체제 안에서 발화되기 어렵다. 체제의 내적 문제를 선명히 하기 위해서는 증언 체제 ‘외부’로 밀려난 서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해 증언을 연구대상으로 삼지만 증언자를 ‘피해자’로 고착하지 않고 증언을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며 형성된 총체적인 산물로 사유한다.⁴⁾ 일반적으로 증언은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특정 정체성으로부터 가능해지는 진술로 여겨지나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주체는 없다. 피해 증언을 입증할 요구받는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증언 체제를 구성하는 제도와 담론을 통해 인정 받거나 인정 받지 못한 피해 증언 모두를 균형있게 다루었다. 나아가 모호하거나 모순된 서술, 감각적 차원에 남아있는 ‘몸의 기억’과 증언 속 침묵과 공백도 증언의 의미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폭넓게 다루었다.⁵⁾

3) 연구자가 분석하는 국가폭력 피해에 관한 증언 체제에서 ‘피해’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명확한 것으로 전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성’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보여주듯 폭력과 억압이 수행되고 지속되는 구조의 복잡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 뿐만 아니라 가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는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적 도식이 깔끔하게 적용되지 않는 행위(주체)가 존재하며 이에 접근할 때 폭력과 억압의 구조에 대해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피해 증언에 비해 가해 증언에 대한 수집과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가해 행위에 대한 공개 증언은 처벌의 문제와 더불어 당사자의 죄책감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지탄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법적·도덕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생각할 때 증언간의 양적 비대칭은 진상규명보다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제도적 ‘수혜’를 중시한 정치적 전략과 제도 수립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가폭력의 구체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증언 수집과 이에 관련한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술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해자성’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심아정, “피해/가해의 틀을 흔들며 출몰하는 오키나와의 조선인 - 가해자들의 ‘말하기’, 그 기점으로서의 오키나와-,” *사이/間SAI* no. 27 (2019): 241-275.; 심아정, “민간인학살 수행 병사들의 PTSD와 가해자들의 말하기: 중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병상일지」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증언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7, no. 2 (2020): 133-172.; 신지영,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성’과 아시아 인민연대 - 오키나와의 한국전쟁, 한국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전시성폭력” *상허학보* 58(2020) : 475-533. doi: 10.22936/sh.58.202002.011

4) 양현아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를 ‘할머니’로 호명하는 것이 다양한 ‘위안부’ 생존자들의 차이를 평준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호명은 생존자 각각의 개별적 삶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주체성이 드러나는 재현의 장을 위축시킨다. 증언자를 어떻게 명명할 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이유이다.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 - 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60, 0 (2001): 60-98. 참고.

5) ‘몸의 기억’이란 몸에 관한 기억이자 몸을 매개로 드러나는 기억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석사논문 「정동적 요소를 통한 증언의 중층성 읽기: 4·3증언 분석을 중심으로」(2020)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언어화되지 못하는 증언의 양식을 ‘정동적 요소’로 분석한 바 있다. 침묵과 서사의 비일관성과 모순 등과 함께 ‘몸의 기억’은 중요한 정동적 요소 중 하나인데, 박사논문에서는 이를 ‘몸 증언’으로 개념화하고 본문 4장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증언 체제(regime)’를 분석적 개념으로 활용했다. 체제란 증언이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의 총체를 의미하며, 법제도와 행정절차, 언론보도와 문화적 재현 등의 이질적 장치들로 조합되어 있다. 일정 수준의 구속력을 발휘하는 장치들로 조직된 체제는 내부에서 형성된 규범을 주체가 수용하고 실천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증언을 하나의 체제로 초점화한다는 것은 증언의 규범을 생성하고 증언을 승인하는 제도적 회로가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밝히고, 증언의 가능·불가능과 인정·불인정을 가르는 조건들의 배치를 선명히 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증언의 관행화된 수행 방식과 증언에 대한 대중의 정동이 어떠한 역사적 계기들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증언 체제의 유지에 공모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과도 이어진다. 증언이 체제에 의해 전적으로 구성되고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통해 체제를 구성하는 제도와 담론, 재현 등의 생산과 행위자의 실천의 모순성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하면 연구자는 체제를 정합적 논리를 추구하는 이론모델이 아닌 인식방법론으로 활용한다.⁶⁾ 체제는 ‘인식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접합하는 개념이며 의미의 가변성과 적용의 다원성에 열려 있다.⁷⁾ 현실의 변화를 ‘자신의 유연한 구조 속에 용해’시키면서 이를 계기로 ‘스스로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분석틀인 것이다.⁸⁾ 따라서 증언을 체제로 문제화할 때의 방법론적 이점은 동등한 위상을 가지지 않는 다양한 장치들을 아우르며 증언의 조건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체제를 그려볼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와 4·3, 5·18이 시대적 배경은 물론 국가폭력과 피해의 양상이 각기 다르지만 국가가 각각의 증언을 어떻게 관리하고 생산해왔는지 살피며 과거사 피해 증언을 다루는 국가화된 증언 체제를 설명하기에 유용할 것이다.

증언 체제에 대한 분석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권력 비판, 그리고 권력의 핵심인 ‘국가’의 문제이다. 푸코는 체제라는 힘의 조직망과 메타적 권력으로의 국가가 상호조건적인 관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는 “육체, 성, 가족, 친족관계, 지식, 테크놀로지 등의 수많은 힘의 조직망과 관련된 상부구조”이다.⁹⁾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 국가는 드러나지 않지만, 균열이 발생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국가는 금지·억압의 형태로 적극적인 권력작용을 한다. 이 과정에서 체제를 구성하는 장치들이 재배열되고 국가가 새롭게 정의된다. 푸코는 체제에 대한 분석이 언제나 국가 단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메타 권력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비판 없이 체제의 정치성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증언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중요한 국면은 1990년대이다. 1990년대는 소비에트 연방 해체에 따른 탈냉전과 신자유주의로 세계질서가 재편된

6)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 앎의 의지* (나남, 2007): 103.

7) 이상길 "이중적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서의 고백 : 미셸 푸코의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7, no. 3 (2019) 78쪽 각주 12번 참고.

8) 이남주, "[분단체제론] 반(反)국적 인식을 넘어서: 분단체제론의 형성과 발전.", *창비 5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한결같되 날로 새롭게: 창비 50년사* (창비, 2006): 573.

9) 폰타나, 파스쿠노, 미셸 푸코, 이성원 역. "미셸 푸코와의 대담-진실과 권력." *외국문학* 3.(1985) 147쪽.

시기이다. 한국은 1987년 6월항쟁을 기점으로 제도적·형식적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주의 통치가 약화된다.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던 과거사 피해 증언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장을 열리며 국가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범람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유족 및 시민사회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이행履행을 요구했고 ‘민주’ 정부는 과거 지배권력에 대한 재판, 정치사회 전반의 제도적 개혁, 역사 다시 쓰기 등과 더불어 과거사 청산을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 정체성을 새로이 형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삼았다. 법률에 따른 청산 기구가 구성되고 법률이 규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심의, 보상 및 기념사업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이다. 그러나 청산은 일회적 접근으로 완결될 수 없었다. 법으로 환원될 수 없는 논쟁과 갈등은 개별 소송의 형태나 시민사회의 운동, 학술장과 다양한 문화예술 실천을 통해 개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요구와 청산의 제도화 작업이 시작된 1990년대부터 구체적인 조건 안에서 체제가 형성되고 작동한 2000년대를 아우르며 증언 체제를 분석했다. 본문에서 초점화하는 4·3의 ‘수형인 직권재심 제도’ 제정과 5·18 ‘성폭력 진상규명조사’, 일본군‘위안부’의 트라우마 조사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설립은 시기상으로 2020년대 전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견 ‘진보적인’ 청산의 성과로 보이는 것들도 지배 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과거사 청산이 내재한 모순이 누적된 결과물이다. 해당 사례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국가폭력 과거사 피해 증언의 체제가 ‘국가화’되었음을 지적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정의하는 국가화된 증언 체제란 국가 권력이 법적·행정적·기타 제도적 절차와 공적 담론, 정동 정치를 통해 증언의 생산과 유통을 조건 짓고 그 효력을 관리하는 방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3.

증언은 ‘폭로’라는 형태로 역사에 ‘돌발적으로 개입’하는 언어이다.¹⁰⁾ ‘국가’를 정당화하는 목적론적 역사의 균열을 내는 까닭에 통치권력은 증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특히 국가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하는 국가폭력 피해 증언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현실 정치의 지형, 제도적 한계와 정동의 복잡한 교차망 속에서 응답될 수 있는 증언과 허용될 수 없는 증언으로 나뉘게 된다. 피해 증언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증언 체제의 법·제도가 ‘국가’라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체제가 증언을 선별하는 기준은 단순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 나아가 ‘인간’의 범주를 배타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쉽다. ‘피해’를 선규정하는 기준에 의해 피해 증언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체제에서는 기억에 대한 억압이 지속된다. 증충적인 억압에 가로막혀 있던 경험, 스스로를 의심하고 검열해야 했던 이들의 확신 없는 감정과 의견은 체제 안에서 말해지기 어렵다. 피해의 범주와 심사 기준의 자의성을 문제 삼고 주변화되

10) 이라영, *폭력의 진부함: 얼굴, 이름, 목소리가 있는 개인을 위하여*(서울:갈무리, 2020), 202.

어 왔던 폭력을 새롭게 문제 삼는 작업은 진상규명 차원뿐만 아니라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 제도가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의식하며 타협하는 과정 안에서 배제된 존재를 포용하려는 노력은 미미했다. 4·3에서 ‘사상’의 문제는 강력한 침묵을 구성하는 축이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여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제주도민은 ‘빨갱이’로 ‘죽여도 되는 집단’으로 전락했는데, 이러한 타자화는 ‘빨갱이’를 ‘재생산’한다고 여겨지는 여성의 몸에는 국가폭력과 젠더폭력이 교차한 형태로 가해지게 만들었다.¹¹⁾

4·3의 진실을 공평정대하게 서술했다고 평가받는 『진상조사 보고서』는 피해의 압도적 규모와 잔혹함을 강조하면서 ‘무고한 학살’의 측면을 부각시켰다.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진상조사 보고서』는 4·3의 “학살”의 측면을 규명하고자 노력하려는 시도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과도한 비방을 자제하려는 움츠림 사이에 빚어진 갈등과 마찰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²⁾ ‘초토화 작전’이란 용어는 ‘강경진압작전’과 ‘대토벌작전’으로 교체되었고 목차 대주제와 소목차, 소주제 안에서 ‘학살’ 용어를 쓰는 대신 ‘살상’, ‘진압’, ‘토벌’, ‘사살’ 등의 단어로 대체되었다.¹³⁾ 또한 『진상조사 보고서』는 피해의 성별 통계를 내고 있지만¹⁴⁾ ‘여성’의 폭력과 피해를 특정하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수집된 4·3 증언 안에서 젠더폭력이 포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초기 증언집인 『이제사 말함수다 1,2』(1989)나 『4.3은 말한다 1~5』(1994-1998)에는 여성이 당한 성적 유린과 강간, 대살 등의 폭력에 대한 목격 증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증언만은 찾아볼 수 없다.¹⁵⁾ 여성의 증언 속에서도 성적 침탈 사례는 폭력의 부차적인 효과로 암시될 뿐, 젠더폭력의 양상이 예각화되지 않는다. 당사자 증언의 공백은 젠더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간신히 살아남은 여성일지라도 압도적인 트라우마에 고통 받고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여 침묵을 택했을 것이다.

전쟁 및 국가 폭력에 대한 연구에 젠더 관점이 필수적인 이유는 식민주의와 군사주의가 기본적으로 “타자성 담론 위에 정당성과 합리성을 구축”하기 때문이다.¹⁶⁾ 한국 과거사의 폭력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인종주의 위에 구축되어 왔으며, 특히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를 심화하는 형태로 지속되었다.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맞이한 후에도 한국의 지배 질서는 근대적 폭력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했다.¹⁷⁾ 과거사 청산 속에서 성폭력 문제가 전면화되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김상숙

11) 강상현, *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푸른 역사, 2024), 252-253.

12) 홍순용·육영수, “제주 4·3평화공원에 새겨진 ‘뒤엎긴 권력’의 흔적,” *중앙사론* 42, (2015): 137-138.

13) 위의 논문 138.

14) 일반적으로 성별 통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여겨지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성별 통계가 누락된 진상규명이 상당히 많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언급된다.

15) 송혜림, “증언-공백으로 읽기”, 고성만 엮음, *속삭이는 내러티브* (한그루, 2023), 153-155.

16) 구은숙, “전쟁과 여성: 젠더화된 폭력과 군사주의 문화,” *미국학논집* 41(3) (2009): 9.

은 '진화위' 1기의 「종합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조사·분석하였음에도 여성 피살자수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⁸⁾ 여성 학살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김상숙은 '진화위'의 「사건보고서」와 「종합보고서」의 자료를 분해해 재집계해야 했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는 국가기관과 제도 내에 젠더적 관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수많은 페미니즘 연구들이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학살과 강간 등의 폭력이 집중된다는 문제에 착목했고 국내에서도 보편적 희생의 서사에 가려지는 전시와 민간인 학살 속 젠더 문제를 논해왔다.¹⁹⁾ 민간인 학살과 전시전후의 성폭력, 강제 수용소 및 보호시설 내 성폭력 문제 등 한국의 과거사에는 규명되어야 할 젠더폭력의 사안이 산적해있지만 이를 위한 법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²⁰⁾

이는 5·18도 마찬가지였다. 5·18 항쟁 활동과 피해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조차 성별 분리 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구체적인 행적을 도출하기 어려웠다.²¹⁾ 5·18은 국가폭력 과거사에서 '항쟁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사건이다.²²⁾ 5·18이 역사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으로 상징된 항쟁주체의 '잔여적 범주'로 여겨졌던 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²³⁾ 1960년대부터 여성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온 전남·광주 지역의 역사적 맥락도 5·18의 여성사를 복원하는데 유리한 토대가 되었다.²⁴⁾ 4·3과 비교해 볼 때 이 차이는 월등하게 드러난다.²⁵⁾ 이는 증언에 관한 연

17) 문승숙, 이현정 역,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하나의문화, 2007).

18) 김상숙, "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no. 131(2021): 64.

19) 김귀옥, "한국전쟁기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과 함의," *구술사연구* 3, no.2 (2012): 7-37.; 최현실, "20~21세기 한반도에서 국가적 성폭력과 그 희생제의로서 여성의 몸," *한국민족문화* no. 46 (2013): 277-311, 10.15299/jk.2013.02.46.277

20) 김상숙, "여성에 대한 국가 젠더폭력 과거청산과 치유 가능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권연구* 7, no. 1(2024): 125.

21) 김지연·박현정·이춘희 외 공동집필, *2025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광주여성가족재단, 2025), 11-12.

22) 대표적 연구로는 강현아, "5·18 민중항쟁과 여성활동가들의 삶," *한국사회학* 36, no. 1 (2002): 171-194.; 안진, "광주전남지역 여성운동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4, no. 1 (2007): 73-110.; 이윤정, "5월 민중항쟁과 여성운동: 송백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 4, 1 (2011): 71-117.; 정경운, "오월항쟁과 여성의 증언- '밥'과 '총'의 서사를 중심으로 -, " *호남학* no. 70 (2021): 1-46, 10.37996/HS.70.1; 한순미, "오월 여성 데칼코마니-대신에/동시에 말하기" *상허학보* 63(2021) : 509-549.doi: 10.22936/sh.63..202110.014.

23) 대표적으로 김영희, "'5·18'의 기억 서사와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연구* 18, no. 2 (2018): 149-206, 10.21287/iif.2018.10.18.2.149; 김영희, "'5·18 광장'의 '애국' 담론과 '여성'의 비가시화 : 청취의 연대가 만들어내는 '여성' 발화의 장소," *경제와사회* (2020): 116-172, 10.18207/criso.2020..126.116; 김영희, "'5·18' 서사의 표면과 '여성' 구술이 만드는 파열." *한국문학연구* 71, 0 (2023): 257-322.;

24) 오월여성연구회가 엮어낸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민중사, 1991) 참고. 이 책은 구술증언 및 피해 조사가 남성 위주로 진행되며 5·18 여성들의 주체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 인터뷰와 수기들을 받아 여성의 구체적인 피해를 서술했다. 또한 전남지역 여성운동사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5·18 항쟁을 위치시키며 이후 5·18 관련 여성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내용 상의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판이 2025년 5월 발간되었다.

25) 4·3 여성을 항쟁의 주체로 그려내는 작업은 주로 문학과 예술 장르에서 이루어져 왔다. 김석범의 『화산도』 작품이 대표적이며 관련 연구로 장은애, "'화산도'의 여성주의적 독해 - 여성 목소리의 시작점과 합류점을 찾아서," *여성문학연구* no. 54 (2021): 242-283.; 박보름, 고명철, "김석범 소설에 나타난 혁명적 여성 주제 -한글 『화산도』(1967)와 대하소설 『화산도』(1997)를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82, no. 82 (2023): 179-218. 임흥순 감독은 다큐멘터리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2019)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와 여성 빨치산과 함께 4·3에서 무장대 연락책으로 활동하고 형무소 생활을 했던 재일

구도 사건의 공인된 담론적 의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5·18 여성사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문제와 주체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성폭력 문제이다.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1991)에 수록된 이경순의 「5월항쟁과 여성의 피해」 글은 당사자·목적 증언에 기반하여 일찍이 성폭력 피해를 정리한 바 있지만 공론화되지 못했다. 1989년 전옥주의 성고문에 관한 증언이 청문회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18 진상규명의 주요 안건에 성폭력은 오르지 못했다. 성폭력 문제를 점화시킨 것은 2018년 김선옥의 언론 인터뷰, 즉 45년만에 이루어진 당사자 증언이었다. 이 증언이 ‘진상위’의 성폭력 직권 조사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던 까닭은 한국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던 #MeToo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⁶⁾ 5·18 성폭력 증언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던 역사는 여성 증언이 필요에 따라 보편적 피해로 용해될 뿐 대부분 ‘비증언’으로 전략한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성폭력 문제는 국가폭력의 ‘가해’ 권력에 의해서 부인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대처하여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투쟁 공동체’ 내부에서도 부정되거나 은폐되어 온 것이다.²⁷⁾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실시된 제도도 이러한 은닉에 일조했다. 신상숙은 5·18 보상심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성폭력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아도 보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²⁸⁾ 제1차 보상신청(1990년)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진압작전’시 일어난 성폭력 피해가 많이 접수되었다. 이때 대다수의 피해자는 자상 흔적이나 의료 기록 등으로 ‘상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심각한 정신 질환을 얻거나 자살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사망자’로 처리되었다. 그렇기에 ‘성폭력 피해 여부’가 문제화 되지 않았고 별도 조사가 생략된 채 인정받는 경우도 존재했다.²⁹⁾

제주인 김동일을 4·3의 여성 항쟁 주체로 조명했다. 제주 해녀이자 4·3 당시 남로당 민주여성동맹 활동했던 김진언의 삶을 다룬 양경인의 논픽션 『선창은 언제나 나의 뒤편이었다』(은행나무, 2022)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26) 김선옥은 당시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한 서지현의 증언으로부터 ‘개인적 수모와 수치’로 여겼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국가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할 수 있었기에 공개 증언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녀는 자신의 피해 호소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삶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그녀의 증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한 증언이면서 동시에 침묵하는 다른 이들을 위한 증언이었던 것이다. 송혜림, “5·18 성폭력 증언의 고립과 연결의 조건들,” *안과밖:영미문학연구* no.58(2025) : 129-159.

27) 2018년 『한겨레』가 연재하기 시작한 특집의 첫 기사에는 5·18 여성 증언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여고생’의 사례가 언급된다. 여기서 ‘○양’은 집단 강간의 후유증으로 조현병의 고통에 시달린다고 설명되었다. 이 기사를 본 ‘5·18민중항쟁 부상자동지회’ 전 회장이 해당 언론사에 ‘5·18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씨를 만나 증언을 들었다고 제보했다. 1989년 2월 20일 그는 ○씨의 오빠와 함께 ○씨를 만나 증언을 들었고 청문회에서 제시할 목적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놓았다. 관련 기사는 정대하, “[단독] “5·18때 군인들이 집단 성폭행한 여고생, 승려 됐다””, *한겨레*, 2018년 5월 9일 (2019년 10월 19일 수정)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43817.html

28) 신상숙, “젠더와 이행기 정의: 5·18 성폭력 보상심의 사례 분석,” *기억과 전망* no.52(2025): 16-66. ‘조사위’가 조사한 사례들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행이나 구금 기록이 남아있는 이들은 ‘관련자’로 인정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직가의 2-5(5)>), 당시 당했던 부상이나 진단 받은 병명으로 ‘상이자’ 인정을 받은 이도 보상신청 내용에는 성폭력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21-가의2-77>).

또한 최초 신고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재심을 통해 인정된 사례가 7건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외곽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일 경우였다. 이 사건들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성별, 신분 등에 대한 조사관의 선입견이 작용하거나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경우이다. 증언이 배척당했던 이들 대다수가 주부, 여학생, 서비스업 종사자였고, 성폭력 피해 증언과 참고인 진술 간의 경미한 불일치 만으로도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는 기록은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³⁰⁾

‘정의로운 국가’는 피해자 개개인이 입은 피해를 ‘국가의 손상’으로 전유하면서 만들어 진다.³¹⁾ 이 과정에서 소수자의 피해, 다양한 폭력과 억압이 교차하는 피해의 양상은 구체화되지 않고 국가가 인정하는 ‘단일한 피해자’의 범주로 개별 증언들이 통합된다. ‘단일체적 제3세계 여성’의 구축을 통해 제국의 남성과 토착민족의 남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형성되듯 국가는 성폭력 문제를 소거한 여성 피해자를 ‘승인’함으로써 정의의 표상이 되었다.³²⁾ 국가의 ‘품격’과 권력의 정당성을 문제시하는 증언자는 증언 체제의 ‘승인’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이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겪은 남성의 증언을 청취했다.³³⁾ 그는 2018년 공동조사단 조사에서도 성고문에 대해 언급했지만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³⁴⁾ 한 장병將兵은 참고인 조사에서 ‘5·18 기간동안 민간인 여성에 대한 강간이 계엄군이 아니라 무질서한 틈을 타 ‘깡패나 이런 류의 사람들’이 한 행위일 것’이란 진술한다.³⁵⁾ ‘간첩 개입설’처럼 계엄군의 5·18 성폭력 문제도 외부의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돌리는 전략은 ‘5·18 청문회’에서도 빈번히 등장했다. 낭마주이나 불량배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용하여 범죄의 혐의를 전가하는 것이다. ‘폭도’, ‘빨갱이’, ‘간첩’ 등의 사회 내부의 ‘불순분자’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국가 주도의 과거청산 안에서도 주변화된 존재들의 몸을 빌어 반복되고 있다. 젠더와 계급, 세대와 지역을 망라하고 비국민-비인

29) 위의 논문 42.

30) 위의 논문 47.

31) 사라 아메드는 호주의 <사과의 책Sorry Books> 속 국가로 인한 수치심을 표명한 호주인(주로 백인인)의 메시지들을 분석하면서 ‘수치심의 정치’가 만드는 효과를 설명한다. 국민으로서 과거 국가의 잘못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할 때 국가를 이상적 주체로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국가의 책임을 묻지만 동시에 국가를 다시 ‘감싸는’ 회복의 서사로 작동하기 때문에 모순적이다.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23) “5장 다른 이들 앞에서 느끼는 수치심” 참고.

32) 로절린드 C. 모리스 역음,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100.

33)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의 2-5]에 대한 직권조사의 보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3), 239.

34) 2022년 5·18 보상법 개정으로 ‘성폭력피해자’, ‘해직, 학사징계자’, ‘수배’ 등이 신청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2023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의 8차 신청이 진행되었다. 8차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는 29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5건은 남성 피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뉴스에는 ‘조사위’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남성 피해자가 실명으로 음성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초롱, “‘나도 5·18 성폭력 피해자’...남성 피해자 5명 보상 신청”, *광주MBC*, 2025년 2월 5일, <https://kjmbc.co.kr/NewsArticle/1446782>

35) 위의 보고서 212-213.

간을 양산하는 타자화 방식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4.

4·3과 부마항쟁, 5·18 등 항쟁의 주체는 국가 중심의 과거 청산 방식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되길 거부해왔다. 독재와 탄압, 무자비한 폭력에 맞선 저항적 주체로 역사에 기입되기 위해 진상 규명과 더불어 기억 투쟁을 벌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 ‘민중’의 서사에 걸맞는 주체의 요건으로 능동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성을 중시한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주체에 대한 일종의 규범이 형성될 때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사건에 접속했던 다양한 주체의 증언을 검열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무고한 피해자성’을 강조하지만, 이 ‘피해자성’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대상화되기도 한다. 바로 영웅적이고 진보적인 서사를 만들 때이다. ‘남성주의적’ 서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성’은 무고하고 무력한 피해자의 것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저항자’로서의 속성이다.

이러한 사고는 피해 증언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량을 함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하는 태도를 은연 중에 작동시킨다. 그러나 증언의 ‘정치적 힘’, 즉 부정의를 폭로하고 변화를 촉구하며 행위성을 발현하는 힘은 증언이 그자체로 내재해야 할 속성이 아니다. 증언의 힘은 증언에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발현된다. 그러나 ‘투쟁공동체’는 증언의 서사나 주체가 계몽적 정동을 지니지 않거나 ‘이상적인’ 영웅의 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한 말을 ‘비증언화’한다. ‘민주화’의 역사 안에 기록된 투쟁과 영광의 서사도 실상 특정 계층과 성별, 세대에 국한된 것이었고,³⁶⁾ 대부분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는 구술채록기관은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혁명에 구술이 집중된다는 현실’을 보여왔다.³⁷⁾

사건에 대한 논쟁에 ‘피해자성’을 중심에 놓는 것은 그 안에 내재한 폭력의 문제를 희석시킨다. 논쟁적 에너지를 피해자에게 과잉집중시키면서 가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많은 경우 공개 증언을 비롯한 피해자의 직접 행동이 요구되지만 ‘피해자성’의 입증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은 사건 해결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권김현영은 페미니즘적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새로운 도덕주의’가 되었음을 지적한다.³⁸⁾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판단에 해석을 전부 위임해야 한다는 의미로 규범화되

36)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20, no. 3 (2014): 187-220.

37) 최종숙, "[학술]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의 기억 - 사회운동과 구술사", *대학원신문*, 2019년 4월 30일,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91>

38) 권김현영,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 권김현영 외 3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22-70.

면서 성폭력 문제에서 중요한 해석 투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연대 또한 ‘편들기의 정치’로 변질시키고 피해의 문제를 ‘개인의 고통’으로 남겨두게 된다. 성폭력은 개인의 피해를 구조적인 폭력의 문제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사건을 의미화하는 다양한 언어가 개입되어야 한다. 해석 투쟁의 언어가 ‘협회의 당사자’의 문제로만 고착되는 사건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문제가 폭로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지배적인 남성 중심적 질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 가해’ 등의 개념을 다른 전략으로 활용해왔다.³⁹⁾ 이러한 전략은 피해자 ‘개인’의 예민한 성격이나 인격을 원인으로 삼거나 가해자 ‘개인’의 (대부분 가해자가 가진 권력과 특권적 자리가 파생한 결과처럼 담론화되는) 부주의나 결함으로 원인을 귀책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에게 불가침의 자격을 부여하는 무비판적 태도를 지적하는 데 쓰이며 이 방법론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사라 아메드와 재키 스테이시는 전지구적으로 고통과 상처의 서사가 급증하는 현상을 ‘증언 문화’로 명명한다.⁴⁰⁾ ‘증언 문화’는 다변화된 자기 서사가 공적으로 출현하기 쉬운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증언 전략이 ‘피해 서사화’를 택할 때 고통과 상처가 물신화되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계한다. 이러한 서사적 양식에서 증언자는 자신이 경험한 피해와 상처를 고정된 정체성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렇게 오인하도록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언론과 미디어의 피해자 재현은 피해 서사를 상업화하여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각종 제도적 혜택과 동일시되는 ‘경제적 가치’로 담론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혐오가 생산되는 정동 정치를 수행한다. 피해자의 손상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성’을 본질론적 정체성으로 담론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피해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피해자에 대한 혐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로 잡는 일도 중요하다.

증언의 정치와 피해자성, 증언자의 재현의 복잡성을 사유하도록 하는 장은 일본군‘위안부’이다. 소녀가 ‘피해자’를 상징하는 표상이라면 할머니는 그와 대조되는 ‘증언자’의 표상이다. 오랜 시간 침묵을 강요당하며 남성-민족 주체에 의해 ‘피해자’로만 재현되어 온 방식을 거부하는 표상은 스스로의 목소리로 자신의 서사를 구성하는 ‘증언자’의 모습이었다. 증언은 ‘위안부’의 정치적 행위성을 부각시키는 행위였고, ‘위안부’ 운동의 요구가 유예되는 현실에서도 트라우마를 극복해나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위안부’ 운동은 공개 증언하는 증언자의 표상을 공고히 하는 장이 되었다. 이들이 현존하며 외치는 증언은 부정된 역사를 가시화하고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켜 운동의 힘으로 결집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개증언의 대표적 장으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에 기해 시작되어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

39) 최미진,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책갈피, 2018), 28-63.

40) Ahmed, Sara, and Jackie Stacey, 2001. "Testimonial Cultures: An Introduction," *Cultural Values* 5 (1): 1-6. doi:10.1080/14797580109367217.

되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를 꼽을 수 있다.⁴¹⁾ ‘위안부’의 공개 증언 집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을 돌며 진행됐고, 유럽 및 미국 등지에 전쟁성폭력과 여성인권을 위한 공적 장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위안부’ 역사를 알리고 인정 투쟁을 벌인 모든 현장에 증언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에 제작된 <낮은 목소리> 연작이 선구적으로 예시했듯 ‘위안부’는 피해자의 ‘군상’(1편, 1995년)에서 일상적 삶을 꾸려가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개별 주체로 서사를 가지게 되었고(2편, 1997년) 결국 연결과 치유를 만들어나가는 정치적 주체(3편, 1999년)로 거듭났다.⁴²⁾ 이러한 재현은 증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와 존재를 가시화하고자 하는 적극적 행위 주체로 변모”하는 ‘위안부’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⁴³⁾ 그러나 피해자에서 증언자로, 단선적 이행에 의한 ‘투쟁하는 증언자 만들기’의 정치가 안고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위안부’ 운동의 대표 증언자였던 김복동의 말년을 다룬 다큐 <김복동>(2019)에서는 그녀를 주체적인 활동가로 재현하려는 강박이 엿보인다.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내가 아니면 누가 증언하겠냐’는 사명감으로 국내외를 돌며 증언하고 강연하는 여정이 감동적으로 조명된다. 다큐가 완성되기 전에 김복동이 타계한 까닭에 다큐는 김복동을 회상하는 여러 주변인의 인터뷰를 서사 곳곳에 삽입했다. 이들이 옮기는 그녀에 대한 기억들은 대부분 활동가로서의 김복동의 굳은 의지, 성실함과 철저함에 대한 것들이다. 다큐를 이끌어 나가는 나레이션은 김복동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이입하거나 그녀 ‘인 듯’ 말하기도 한다. 서사의 구성과 보조 텍스트로의 인터뷰, 나레이션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김복동의 ‘인권 활동가’라는 표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렴되는 것이다.⁴⁴⁾ 활동가적 면모 외에 자주 보여주는 장면은 그녀의 늙고 아픈 몸이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다. 백내장이 악화되는 눈이나 척추의 협착이 심해져 병원을 왕래하는 모습, 암투병으로 수술과 입원을 받

41) ‘수요시위’에 대한 개괄적 이해는 윤미향, *20년간의 수요일-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외치는 당당한 희망* (웅진지니어, 2010)

42) <낮은 목소리> 3부작 중 1편인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1995)에서는 ‘나눔의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위안부’의 일상에 가닿고 중국 무한의 조선 출신 ‘위안부’ 위안부를 찾아가는 두 축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사를 구성하고 이끄는 주된 요소는 증언이다. 다큐 전반에서 ‘더 늦기 전에’ 피해 증언을 듣고 남겨야 한다는 초조한 마음이 엿보인다. 반면 <낮은 목소리 2>(1997)에서는 증언 청취에 대한 강박은 낮아지고 ‘나눔의 집’의 일상을 파고 들면서 함께 살아가던 강덕경의 죽음을 지킨다. 이 편에서 인물들은 전형적인 ‘피해자’와는 다르다. 이들은 스스로가 보여지고 싶은 대로 찍어주길 요구하고 자발적으로 연출하기도 한다. <낮은 목소리3-숨결>(1999)은 이용수가 감독을 자청해 다룬 ‘위안부’를 인터뷰하는 전반부와 김윤심이 쓴 수기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고 너희다 -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수기」(1998)를 중심으로 김윤심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후반부로 구성된다. <낮은 목소리>에 관한 연구는 이유혁, “서벌턴 주체로서 일본군 ‘위안부’: 변영주의 낮은 목소리 삼부작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no. 83 (2018): 281-312.; 김지연, “‘낮은 목소리’ 연작 연구 - 정치적 주체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상허학보* 59(2020), 603-638. doi: 10.22936/sh.59..202006.016

43) 김지연 위의 논문(2020): 609.

44) <김복동>의 주제적 의도는 송원근 감독과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 ‘미디어몽구’의 김정환 3인의 인터뷰 기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계셨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김복동은 철저하게 운동가였다”고 회상하는 윤미향의 발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장영엽, “<김복동>을 통해 만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화·인권운동가, 그리고 존엄한 한 개인으로서의 김복동 이야기”, *씨네21*, 2019년 8월 8일, https://m.cine21.com/news/view/?mag_id=93593

복하는 장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다큐는 이러한 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접속사로 증언자의 주체성에 연결시킨다. 고통과 노화는 활동가의 의지 앞에서 극복되는 요소일 뿐 그 몸을 다른 식의 말하기로 읽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화’된 증언자 재현은 증언을 ‘신성시’하는 기조와 연결된다. 휴머니즘적 태도로 증언을 신성화할 때 피해자를 ‘무조건적인 선인’으로 규정하게 되지만 이는 피해자를 단순화하고 정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⁴⁵⁾ 이지은은 ‘위안부’ 담론 내에 증언을 성화聖化하는 태도가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⁴⁶⁾ 위안부 연구 안에서 증언을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변형하는 것을 경계하며 증언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는 태도는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날조가 심화되면서 그 기조가 더 강해졌다.⁴⁷⁾ 그러나 기존 증언을 보존하려는 태도는 증언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의미화하는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증언의 상호구성성을 무시하고 ‘원본’을 훼손 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인식은 증언자를 자신의 증언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증언을 물화物化할 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재현이 ‘AI-증언자’이다.⁴⁸⁾ ‘AI-증언자’는 증언하는 증언자의 모습을 고화질로 촬영한 후 유효한 답변들을 특정 질문들에 대응하도록 처리하여 AI 영상 기술을 통해 관객과의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 표면적으로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는 이 방식은 실상 증언을 ‘언어화된 답변 데이터로 매칭’함으로써 증언을 과거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진술로 인지하게 만든다. 특히 ‘AI-증언자’의 증언에서 폭력에 대한 증언은 증언자의 고통이나 이를 표현하는 언어적 한계 등 트라우마 증언이 한계적으로 구성되는 언어임을 감각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AI-증언이 수행하는 상호작용은 증언을 협력적 대화로 이해하거나 증언자와 질문자간에 놓여야 할 중요한 윤리적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증언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한 사유는 위안부 증언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방식을 일원화하고 담론장 또한 폐쇄적으로 만들었다.

능동적인 정치적 주체로 ‘위안부’를 재현해야 한다는 운동의 강박은 이러한 표상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를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안부’ 운동이 여성인권의 프레임 속에서 국제적이고 동시대적인 문제와의 연결을 만들어낸 것은 침체되었던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전환이 되었지만 문제는 그것이 ‘소수’의 증언자에 의해 대표되었다는 점이다. 문경희의 연구에서는 ‘위안부’의 ‘증언자’ 표상의 강력함이 어떤 역효과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소개된다. 활동가인 ‘면담자 B’는 자신의 지역에서 한 활동가가 ‘피해자의 평범한 모습’에 실망해 활동을 그만 두었다고 말한다.⁴⁹⁾ “위안부 할머니라고 하면 다들 활동하

45) 김지연 위의 논문(2020) 612쪽.

46) 이지은,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220-221.

47) 일본의 우익 정치인을 비롯해 ‘위안부’ 문제를 부정, 왜곡하는 세력은 ‘위안부’ 증언에서 단편적인 진술을 추출하여 ‘강제연행’을 부정하거나 이들이 ‘매춘부’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시기별로 진술이 변하거나 공식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논거로 증언의 신빙성을 폄하했다.

48) 송혜림, “우리는 왜 현전하는 증언자가 필요한가?: AI-증언에서 다른 증언의 정치로 나아가기”,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기획, *폭력에 대항하는 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2024), 55-81.

49) 문경희, “경남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활동가들의 기억과 구술을 통해 본 피해자들의 내면과 사회

는, 막 증언 활동을 하고 인권운동가로 사시는 할머니들만 생각을 하다가 진짜 평범한 할머니라는 게 불편했던 것 같다”며 당혹스러웠던 기억을 회상한다. 이러한 표상은 ‘위안부’ 운동이 무고한 피해자상을 극복한 기억 투쟁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증언자’라는 과잉 대표된 표상이 ‘위안부’ 내의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한 존재를 누락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⁵⁰⁾

이러한 난점은 한계된 증언 담론의 확장을 요청한다. 일찍이 김수진은 ‘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가 근본적으로 실증주의 역사학의 인식론이 내재한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성찰한 바 있다.⁵¹⁾ 불완전한 기억을 객관적 실증의 사료로 요청한다는 점, 증언자로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에 대한 인정과 공분을 이끌어야 하는 점 등은 ‘위안부’의 증언 담론이 겪어왔던 난점이었다. 나아가 김려실은 ‘위안부’의 증언이 유무형의 제도화된 재현으로 전환되면서 지식인의 ‘번역’이 이러한 아포리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임을 지적한 바 있다.⁵²⁾ 이 과정에서 보편성(혹은 이상성)을 중심으로 기억의 위계질서가 작동하면서 공적 증언의 한계가 설정된다. 김려실은 포스트메모리 시대에 접어든 현재 ‘증언 이후의 증언’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위안부’가 증언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싸웠고 그들의 마지막 길을 돌보아왔던 활동가, 연구자, 예술가들의 연대적 포스트 기억”에 기존의 증언의 아포리아와 재현의 위계질서를 넘어설 힘이 내재한다고 본 것이다.⁵³⁾ 평련위 또한 트라우마 증언에는 반드시 ‘타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위안부’ 증언의 공적 발화가 치유의 결정적 계기가 아니라 증언을 수행하는 안팎의 경험을 통해 주체가 변화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 경험에서 ‘타자’가 주체에게 새로운 인식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⁵⁴⁾

위와 같이 증언은 항상 관계를 함축함으로써 행해진다.⁵⁵⁾ 이러한 증언의 특성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몸 증언에서 더 분명해진다. 몸을 ‘통해’ 호소되는 고통은 이를 목격하는 다른 몸의 감각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몸 증언은 전언어적 차원에서 고통의 양상과 그 의미를 공명하는 소통이며 상대를 목격자이자 제2의 증언자로 연루시킨다. 이러한 역학은 증언을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당사자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성의 증언들을 담론장 안에 자리하도록 만든다. 당사자의 증언을 존중하고 언어에 대한 고유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칫 당사자에게 입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적 관계,” *젠더와 문화* 15, no. 2 (2022): 45. 10.20992/gc.2022.12.15.2.33

50) 여기에는 ‘위안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활동가의 책임도 있다.

51)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30, no. 1 (2013): 62-63.

52) 김려실, “증언과 상상 -일본군‘위안부’의 기억과 포스트기억 예술,” *여성문학연구* no. 60 (2023): 332-334.

53) 위의 논문 335쪽.

54) 彭仁郁, “進入公共空間의私密創傷: 台灣「慰安婦」의見證敘事作為療癒場景,” *文化研究Router*, 第14期 (2012): 164-165.

55) 아서 W. 프랭크, 최은경·윤자형 역, *아픈 몸을 이야기하기* (갈무리, 2024(개정판)), 287-288.

부과하는 공격으로 미끄러질 수 있듯이, 당사자의 증언과 함께 ‘연대’하는 관계성과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서사를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에게 집중된 증언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소수의 증언자에 의해 대표될 수 밖에 없는 증언의 정치를 탈중양화하는 기획과 나란히 놓여 있다. 나영정은 피해자의 요구가 ‘구체적인 얼굴’로 제기될 지라도 이를 통해 만들어진 권리는 ‘누구의 이름도 아니어야 함’을 강조했다.⁵⁶⁾ 누락된 권리에 대한 ‘당사자’의 실감과 증언은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강력하지만 그러한 권리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름’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이름을 지우는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5.

과거사 피해자로부터 호명된 ‘국가’는 피해 증언에 응답해야 했다. 그러나 과거 가해세력이 지배질서 안에 잔존하는 상황에서 청산이 ‘가능한 영역과 방식’은 한계적이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과 협상을 지속해왔지만 ‘회복적 정의’라는 국가의 청산 기조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보다 위기에 놓인 ‘국가’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데 더 기여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주도한 과거사 청산에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란 피해자 요구는 도외시된 채 ‘명예회복’과 ‘배보상’ 모델이 강화되었다. 이는 법적으로 ‘피해자’를 공인하고 이 자격을 통해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로부터 피해자로 ‘승인’ 받기 위한 피해 증언이 중요해졌지만 이를 검증하는 기준과 방식은 밝혀진 일부분의 ‘진상’에 기반하여 권력에 의해 선 규정되었다. 국가 권력이 법적·행정적·기타 제도적 절차와 공적 담론, 그리고 정동 정치를 통해 증언의 생산과 유통을 조건 짓고 그 효력을 관리하는 ‘증언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국가’는 다양한 계기에서 등장한다. 국가는 추상적이지만 동시에 개별자들 삶의 구체적인 국면에서 실감하는 실제적인 힘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속에서 마주하는 법질서와 행정절차, 제도적 규칙들은 피해자에게 ‘국가’의 권력으로 체감된다. 피해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적절한 피해 구제 조치에서 제외되었을 때 주체는 ‘국가’가 자신을 부정한다고 느낀다. 피해 증언에 대한 의심과 불인정, 무응답은 피해자를 국가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비국민’으로 느끼게 한다. 과거사 청산의 ‘증언 체제’는 이처럼 선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직결된 정동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는 비단 ‘피해 당사자’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결, 국가 담화, 피해 불인정자의 호소와 언론 보도 및 미디어의 재현을 통해 확산되는 정동이다.

국가화된 ‘증언 체제’의 제도와 담론, 정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 내용이었지만, ‘증언 체제’의 구성요소를 계열화하거나 체제의 내적 논리를 규명하는 것이

56) 나영정, "혐오표현과 시설사회," *횡단인문학* 14. (2023): 81.

목적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체제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체제가 작동하는 양상을 조명하면서 과거사 청산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상찬되는 한국의 '이행기 정의'가 불완전하고 편향된 것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통제되는 것이 다른 아닌 개별 피해자들의 구체적 언어와 삶이라는 점을 지적하려 했다. 고통받고 억압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투쟁 도구로 의지할 수 있던 파급력 높은 언어적 양식은 국가의 '증언 체제' 안에서 그 정치적 힘을 소거하는 형태로 '역사화'되는 중이다. 이처럼 증언을 둘러싼 조건적 장이 급변했지만, 증언의 인식론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 간극을 좁히고자 증언에 대한 메타적이고 비판적인 탐색을 시도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한 바였다.

오늘날 증언과 관련한 여러 논쟁은 이러한 간극으로부터 파생한다. 증언이 역사적으로 촉발해 온 변혁적 힘은 증언이란 양식 자체가 지닌 정치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구축되었다. 이는 '증언하는' 주체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동반했는데 이 때문에 소수의 증언자가 피해자 운동을 과잉 대표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다. 피해자 집단이 운동의 일환으로 수행한 '증언의 정치'가 이론 성취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이 정치가 형성한 개인화된 증언의 관념과 피해자 내부의 위계적 질서에 대해서는 비판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두된 '피해자 중심주의'가 역으로 피해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유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기억의 복잡한 역학과 증언의 서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소한 진위 논쟁으로 증언 전체의 의미를 폄하하거나 증언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태도 또한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증언 텍스트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꾀하고자 기억-서사의 구성적 성격을 강조했던 논리가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휘둘러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논쟁은 증언을 '통제'하려는 지배권력 및 반대 세력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 전략 속에서도 강화되었다.

본 연구의 국가폭력 과거사 피해 증언은 한국의 미해결 사건을 폭넓게 다루지 못했다. 어떠한 과거사 문제가 공론화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건으로 인정받는지는 차등적으로 분배된 공간지리적 힘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의 규모가 작다고 여겨지거나 역사적인 상징성이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인이 부재하는 등의 이유로 소외된 과거사들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 외에도 재난과 사회적 참사의 피해가 존재한다. 이들은 사회적 공감대로 인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화된 위험을 살아가는 귀어, 장애, 이주민, 난민 등의 소수자의 삶은 사회적 조치가 필요한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폭력 과거사 청산이 국가적 의제로 부상한 1990년대는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인권 운동이 활발히 시작되고 전개된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운동의 요구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진 것은 과거사 문제일 뿐, 당대 함께 부상했던 노동자와 농민 운동, 소수자 인권 운동 등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증언 체제'가 지배질서와 밀착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나 제정되지 못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교할 때 국가폭력 피해 증언은 '체제적 특권'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증언 체제'에 대한 비판은 '체제'조차 형성되지 않은, 배제된 피해 증언에 대한 고민을 안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제도의 마련, 역사화 작업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는 '피해자 정의'를 위해 중요하다. 한국의 증언 체제가 일정 수준의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체제가 '승인'한 증언들 속에서 여전히 '증언'할 것이 남아있다는 목소리를 문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증언 체제'가 만든 배타적 정동에 갇히지 않고 '증언'이 되지 못한 '증언'을 위한 마땅한 자리를 고민하는 노력이 증언 연구의 안팎에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비판적 연구의 계보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믿는다.

토론문

목적한 문제의식과 과제

- 인도주의 국제규범의 전유와 근대 한국의 젠더 통치

예지숙(숙명여자대학교)

1. 목적한 문제의식

이 논문은 개항기~일제시기 인도주의 담론-국제규범의 작동 양상과 성격을 젠더적 시각으로 분석한 연구다. 국제규범의 영향을 주권 독립국가-국민국가로 한정하여 논의해 온 연구의 인식론적 맹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연구적 공간을 창출하여 그간 연구에서 비가시화된 영역을 드러내고 식민지에 행위성을 부여한다. 또 젠더적 시각은 이상적이거나 진보적으로 여겨 온 인도주의 국제규범이 젠더 통치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주목하게 하여, 기존 인식을 재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유’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수용과 적용에 관한 논의를 넘고, 그간 주목하지 못한 식민지 주체의 행위성을 살피게 한다. 나아가 식민지에서 인도주의 국제규범은 저항 담론이 되기도 하지만, 식민 권력이 전면에 등장하는 일제 말기에는 식민 통치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즉 인도주의 국제규범이 발휘되는 구체적인 필드인 조선에 전유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이 논문은 인도주의 담론이 지배와 저항 어느 쪽에 귀속되지 않는 유동적 속성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덧붙이자면, 이 연구는 여성 노동, 소수자 연구, 공창제, 일본군‘위안부’ 연구 등의 성과를 폭넓게 흡수하고 새로운 시각을 더하고 있어 한국사학계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분투해 온 소수자 연구, 젠더사 연구에 또 하나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 기대된다.

2.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 목적한 문제의식을 시기별 서술로 담는 것

이 연구는 ‘제국적 인도주의’의 시대에 인도주의 담론이 한국에 전용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19세기 말~1945년을 연구 시기로 하고 있다. 노비제, 여성과 아동 노동, 인신매매와 공사창제, 전시 체제기(노동, 가족국가의 젠더 배치, 선전전)를 분

석 대상으로 삼는데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도주의 담론의 관심사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책사나 운동사에서 연구에서 쓰는 시기적 서술 전략을 채택한 때문일까, 여러 소재가 시기에 따라 병치됐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분석보다 배열이 논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원래 계획했거나 혹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술 방식이 있다면 듣고 싶고 그것이 어떤 서사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 선형적 서술 전략이 남긴 것.

시기	관심사	담론 수행 주체
1880년대	노비제 - 반노예제 국제규범	조선정부 지식인
1920~30년대	노동 - ILO 국제규범	민족운동 세력
1930년대	성매매 - 국제연맹 인신매매 조약	기독교 지식인
전시	노동, 가족국가, 선전전	일본제국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글은 시기에 따른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 구조는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과 같은 것을 살피는데 유용하다. 이 글도 외형적으로 시기적 흐름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의 과제는 해당 국면에 관심사로 떠오른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를 관통하고 있는 젠더 통치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틀이 그 의도를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여하튼, 이러한 구조를 통해 밝히고자 한 중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국제규범의 전유를 통해 구성된 담론이 인신매매에 반대하고 해방을 촉구하며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성과 노동 관리의 차원에서 여성과 아동을 가족과 사회 속에서 적절한 위치로 배치하려 하는 통치 권력을 담론이 행사했다는 것이다”

인도주의 담론이 해방이 아닌 젠더 통치였다는 것인데, 이는 김은경의 선행 연구에서도 주장된 바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인도주의 규범의 젠더 통치적 성격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인들이 국제규범을 전유하는 능동적 과정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전유와 젠더 통치의 관계야말로 선행 연구와 변별점이자 중요한 진전이다. 김은경은 국제규범을 비판적 해체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인이 식민주의 비판의 근거로 국제규범을 전유한 능동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규범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지배와 저항 어느 쪽도 아닌 모순적 속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과제는 시기에 따라 인도주의 담론이 누구에 의하여 전유되

어 그것이 각 국면에서 통치로 작동하였는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유의 주체가 조선 정부와 식민지 지식인에서 식민권력으로 이동하는 4장에서 전유 개념이 여전히 유용한 분석의 틀인지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약자의 전유와 강자의 전유가 동일한 층위에서 논의되는 근거) 이러한 목적을 기준으로 해당 연구를 비평하고 문제 제기를 도출하며, 각 장에서 전유 양상과 젠더 통치가 어떻게 시기적으로 변주하는지 밝히면서, 인도주의 통치 규범이 배제와 통치의 구조이자 저항의 언어이기도 했음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술을 보면 핵심 논지가 각 장을 통해 반복되며 각 장은 논지를 증명하는 각각의 사례처럼 보인다. 담론 수행 주체에 의한 젠더 배치 방식은 각기 다를 텐데, 그것이 어떻게 통치 논리로 연결되는지 궁금하다.

-전유 : 전유를 통해서 인도주의 담론이 어떻게 변형 재구성되었는지, 그 변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젠더 통치 논리 : 각 장에서 분석하는 젠더 통치는 국면마다 질적으로 다른/같은 것인가?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식민성의 역할 : 식민성은 젠더 통치의 배경인가, 인도주의 담론의 젠더 효과를 규정하는 분석 변수인가? 식민지라는 조건이 인도주의 담론의 수용과 전유 효과를 어떻게 특수하게 구성했는가?

예를 들어 4장

4장을 보면 ILO 탈퇴 전후 노동보호법의 변화, 가족 국가관과 젠더 배치, 반노예제 담론을 활용한 영·미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로 병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전유’라는 분석의 틀로 보았을 때, 일본 제국이 전유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다. 4장에서 다른 규범의 차별적 적용, 보호 언어의 가족 국가적 대체, 선전전에 인도주의 수사의 무기화는 각각 다른 방식의 전유인데, 이것이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젠더 통치 논리로 연결되는지 분석되면 좋을 듯하다. (더불어 조선인들의 전유는 어떤 균열을 냈는지?)

* 서론에서 문제의식을 전개하고 문제 제기를 쌓아감에 있어 연구 비판이 소재적이고 분산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A는 OO을 다루었지만 XX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반복되는 듯) 관통하는 비평은 무엇이고 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문제 제기는 무엇인가?

토론문

“국가화된 증언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과거사 여성 피해증언을 중심으로”

최성용(성공회대학교)

송혜림 선생님의 발표 원고는 기존 박사논문의 방법론적 시각을 유지하되, 학술대회에 알맞게 기존 박사논문의 내용을 “여성 피해 증언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읽힙니다. 박사논문은 “과거사 피해 증언에 관한 제도·담론·정동 분석”을 주제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제주4·3, 5·18, 그리고 일본군‘위안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발표 원고에 박사논문에 담긴 무수한 논점과 맥락들을 소상히 다룰 순 없겠지만, 선생님의 주된 문제의식과 하고 싶은 말을 축약해 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인상은, 발표문을 쓰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가와는 별개로, 왠지 모를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포스트구조주의에 영향 받은 비판적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로 위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모델이 아닌 인식방법론”으로 ‘증언체제’ 개념을 도입해, 푸코의 ‘장치’ 개념으로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증언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담론·정동적 조건들을 분석해 ‘국가화된 증언체제’를 규정하고, 그로 인해 구성되는 ‘피해자 위계(victim hierarchy)’, 그중에서도 특히 ‘젠더’ 권력관계로 인해 구성되는 위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민주화 이후 이행기정의의 축적된 경험과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거리감을 확보하고,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기를 통과하며 그 속에서 제기된 논점들을 성실하게 곱씹어 온 ‘세대적 위치’의 소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두 용법: 집합적 범주이자 구체적 개인

우선 ‘피해자’라는 범주에 내포된 두 가지 상이한 용법을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이름과 사연, 신체를 지닌 피해자 개인과, 피해자 개개인을 넘어서고 그로 환원되지 않는 집합적 범주로서 사회 일반적인 범주로서 피해자는 그 층위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한 사람의 피해자를 이해하고 말할 때에도 사회적 수준에서 구성되는 피해자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경유하며, 후자는 전자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송혜림 선생님의 ‘증언체제’ 역시 이러한 범주 구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증언의 양식 속에서 그 양식을 통하여 증언이 가능 또는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겨냥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차연(differance)으로서 부단히 미끄러지는 언어를 강조할

때에도, 저는 개인적 범주와 집합적 범주 사이의 구분이 유효하며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구성원이 너르게 공유하는 공통감각으로서 피해자에 관한 지식과 도덕적 감각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날개의 지식으로 (유명론적으로) 환원될 수는 없으며, 후자는 언제나 전자를 초과합니다. 우리는 주체 범주를 통해서, 주체 범주 속에서 자신을 자각하니까요. (다소 부가적 논점으로, 저나 송혜림 선생님이 다루는 폭력과 피해의 사례들은 늘 개인의 몸에 가해지지만 그를 통해 항상 ‘집단’을 향한 파괴, 절멸, 지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 역시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는 개인과 집합이라는 이중적인 호명 속에서, 분열적으로 스스로를 자각하는 셈입니다.)

다만 집합적 범주로서의 피해자는 피해자와 사회운동의 도전(부분적으로 연속적인)이 이뤄내는 협상과 타협을 통한 부단한 재구성을 겪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룬 제주4·3 수형인과 5·18성폭력 사례는 인정될 수 있는 피해자의 경계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범주의 구분과 사회운동

이러한 논점을 확장해, 저는 사회운동에 대한 평가가 더 정교화하고 싶습니다. 비평이 운동에 기여하려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논자와 텍스트를 정확하게 겨냥해야 하고, 또 사회운동의 암묵지적 맥락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대체로 진영화된 구도에서의 인상비평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훈계적 타자화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니까요.

단적인 예로,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의 구도 -민족 대 여성- 는 범주의 혼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위안부’운동의 민족주의적 편향을 지적하는 논의들이 90년대에 가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젠더’가 빠진 채 민족과 민중을 호명하거나 ‘전체 운동’의 ‘부문 운동’으로 여성운동을 규정하던 당대의 맥락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은 중요한 역사적 기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법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1990년대의 ‘위안부’운동은 (대학이 대중화되기 이전 시기의)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 출신의, 진보적인 기독교(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은)의 영향 속에 놓인 여성운동에 영향 받은 지식인 여성의 관점으로부터 서서히 이탈해, 초민족적이면서도 식민주의적이고, 지역적이면서도 글로벌하고, 젠더와 계급이 교차하고, ‘성정’스럽고도 ‘속속’된 ‘위안부’라는 주제의 복잡성을 이해해갔던 것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위안부’운동이 지금도 여전히 민족주의적 편향에 기울었다거나 위안부와 공창제의 분리하고 있다는 평가는, 사회운동을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대상으로, 그리고 내적인 이질성을 결여한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관점을 노정합니다. 오늘날 ‘위안부’운동은 아시아연대회의나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전쟁범죄 여성들을 향한 연대를 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민족주의적이지 않다”며 그렇다고 “식민주의 문제를 누락할 수는 없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집합적 범주에 관한 논점을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운동 역시 법 제도를 포함한 권력의 네트워크 호명하는 범주나, 당대 사회의 규범과 공통감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사회가 ‘한일관계’의 맥락에서만 ‘위안부’ 문제를 소환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8월 15일 즈음 한일관계의 문제로서만 ‘위안부’ 문제를 다루어 온 이상, 사회운동이 제기해온 ‘위안부’ 문제의 풍부한 의미나 의제는 사상된 채 ‘반일’의 틀로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회적 이해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도의 형성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미디어의 관심과 대중의 후원을 통해 지속되는 사회운동의 처지에서는, 복잡하고 상이한 결들이 단락된 채 ‘반일’로만 프레임될 것을 알면서도 얼굴을 비추고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컨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사회운동의 운신의 폭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일정하게 사회운동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공통감각의 한계에 저항하며 피해자에 관한 상상력의 경계선을 넓히기보다, 그 공통감각에 영합하는 경향을 보여온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사회운동의 탓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증언자의 출현이 “감응의 공동체”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을 이 대목에서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운동의 문법

실은 저부터가 오랫동안 한국의 시민사회의 습속으로 굳어 있는, 나이 든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게으른 사유와 굳은 머리를 앞장서서 비판해왔습니다. 운동의 의제와 의미를 폭넓게 확장하며 상상력 넘치는 기획과 언어를 구상하는 대신, 모든 구체적 이슈를 정권퇴진론이나 통일, 해방과 연결시키는 목적론적인 환원주의의 관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답정너’인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송혜림 선생님이 다양한 운동과의 연결점을 상상해보자고 제안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느낀 답답함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다만 사회적 표상의 인격화(personalization)나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의 진영화는 불가피한 현실정치의 양상입니다. 이에 문화정치론은 특정한 개인의 표상에 부여되는 성스러움의 의미와 그 힘에 주목하기도 하고, 사회운동론은 프레임 이론을 통해 단순화되어 쉽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프레임 전략이 광범위한 지지자를 조직해 낸다고 설명합니다. 현실적으로도 특정한 의제를 제기하는 옹호형(advocacy) 사회운동에서 피해 당사자 동원과 조직화는 중요한 계기인데, 당연하게도 모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각기 동상이몽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갖습니다. 사과와 인정 없는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오히려 다수일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요청하는 모든 사회운동이 이 지점에서 딜레마를 겪습니다. 당연히 경

제적 보상을 받고 ‘손절’하는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미움이나 갈등 같은 ‘속사정’이 작용하게 됩니다. 또, 사회운동은 끝까지 정의의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운동의 맥락에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딜레마에서 분할통치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피해자를 ‘돈 더 타먹으려고 그런다’고 비난하고, 또 그런 피해자에 대비해 경제적 보상을 받고 침묵하는 피해자를 ‘양민화’하려 합니다. 궁극적으로 분할통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사회운동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기획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advocacy형 사회운동에 한정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운동만 하더라도 정의연과 같은 양식만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중심으로 한 운동도 당연히 가능하고 존재합니다.)

사회적 표상으로서 피해자와 연쇄의 논리

피해자의 존재는 사회적 부정의의 표상이며, 피해자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는 그 사회구성원으로부터도 불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하거나 피해자와 사회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사회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됩니다. 그 노력은 한 사회가 공유하는 도덕감정 또는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적 외상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속된 것’으로 낙인이 가해져 온 피해자를 ‘성스러운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규범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송혜림 선생님이 피해자 및 피해자 증언의 ‘성화’에 관한 사려 깊은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성화’가 (후기구조주의적인 논리를 따라) 사회운동이 사회적 규범을 (재)구성하는 구조화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언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감정을 건드리고, 훼손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할 원천으로 ‘성스러움’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사회적 규범이 구성되는 이러한 문법으로부터 사회운동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행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증언을 통해 연루되어 스스로를 변용해가는 사유와 실천 대신에, 피해자를 대상화하면서 증언에 대한 응답책임을 피해자에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변명으로) ‘외주화’하는 것이겠지요. 무엇보다 피해자 표상의 ‘성화’의 불가피성과,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지식 및 표상에 관한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화’를 통해 문화적 외상으로 구성된 피해자의 증언과 기억이 가지는 힘 내지 수행적 계기에 대해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1988년 ‘5공 청문회’는 5·18만이 아니라 수많은 과거사 사건들의 이행기정의가 시작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전국 단위로 이슈화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는 진실화해위원회 설립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등 시설인권침해 사건, 해외입양문제 등을 이슈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유가족운동의 한계를 딛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그간 ‘사회적 참사’로 여겨지지 못했던 과거의 재난

참사 피해자를 향한 지원과 연대로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 5·18열매가 결성되기 위해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리부트가, 그리고 그 앞선 계보로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에서 선형적인 진보의 시간이 아니라 연쇄와 퍼져나감, 시간순이 뒤엉킨 계보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문화적 외상을 구성하는 피해자의 ‘성화된 표상’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연대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연쇄와 확산의 어떤 도달점이 저에겐 지난 ‘남태령 대첩’과 그 이후의 광장이었습니다. 자유발언에 오른 시민들은 스스로의 피해자성, 취약성, 위치성을 ‘증언’하면서 거기에서 드넓은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제게 있어 지난 광장은, 무슨 사회적 맥락과 담론적 토대로부터 ‘다정함과 연대’의 순간이 출현할 수 있었는가, 그러한 광장의 증언들을 어떻게 ‘사상화’해 갈 것인가, 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라는 층위

선생님의 논의에서 역설적으로 ‘국가’가 사라진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법·제도가 ‘국가’라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작동한다”는 문장은 맥락상 이해가 가지만, 국가를 ‘이데올로기’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이는 미셸 푸코의 논의에서 ‘국가’가 사라진다는 니코스 풀란차스나 밥 제숍의 비판을 상기하게 됩니다.

저 역시 크게 빛지고 있는 푸코의 개념들은, 이론적으로 국가론의 결여라는 쟁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현대사에서 국가는 그저 법제도가 피해자 인정의 경계선을 긋는 명분으로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물질적인 몽둥이와 총으로, 사회 전반을 시설이자 감옥으로 만드는 제도적 힘으로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했던 박상은은 조사위라는 거버넌스 기구를 ‘트로이 목마’로 비유했는데, 거버넌스라는 이름의 국가기구를 통한 이행기정의 모델이 가진 한계 역시 국가에 대한 규정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가’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를 강조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비판적으로 강조하는 “국가화”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로서, 그리고 구조화된 사회적 규범을 결코 우회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요. (사실 잘 지적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푸코에게는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쟁점을 부각하기 위해 ‘문화 연구스러운’ 관점보다는 좀 더 ‘사회학스러운’ 입장에서 논의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에서 지적한, 김복동의 나이 들고 병든 몸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면서, 피해자를 귀어와 장애, 질병 연구의 맥락에서 어떻게 다시 읽을 것인가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은 선생님과 제가 동료로서 앞으로 함께 해나가길 기대합니다.